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64-01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I 일시 I 2010년 11월 1일(월) 14시~17시
I 장소 I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프 로 그 램

❖ 일시 : 2010년 11월 1일(월) 14시-1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사 회**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14:10~14:25 (15분)	**이주아동 교육권의 국제적 기준과 해외 사례**	**이혜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4:25~15:10 (45분)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와 개선방안**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15:10~15:20 (10분)	**휴 식**	
15:20~15:50 (30분)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정부정책**	**박재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이동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15:50~16:30 (40분)	**토 론**	**성상환**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장)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김재우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역량강화팀장)
16:30~17:00 (30분)	**종합토론 및 정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목 차

▌주제발표 1.
이주아동 교육권의 국제적 기준과 해외 사례 ····· 1
이혜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2.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종합보고 및 정책제언 ····· 17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정책발표 1.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정책 ····· 67
박재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정책발표 2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이민정책 ····· 75
이동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토 론 문 ····· 85
성상환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장)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김재우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역량강화팀장)

▌참고자료.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99

주제발표 1

이주아동 교육권의 국제적 기준과 해외 사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혜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아동 교육권의 국제적 기준과 해외 사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혜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문제제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9년 12월 1,168,477명으로, 총 인구 49,773,145명의 2.3%를 차지한다(법무부, 2010)[1] 외국인주민 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비숙련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입되기 시작했던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2006년 정부의 공식적 실태조사 이후 매년 20.0% 이상 증가하여 2009년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2]. 이를 통해 1990년 체류외국인이 약 5만명으로 총 인구대비 0.1%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 불과 20년만에 체류외국인 110만시대로 접어들어 한국사회에서도 외국인의 이주(移住)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의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중소제조업 저임금 노동인력의 수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의 이주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외국인주민 2세의 증가이다. 2009년 외국인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년대비 53.9% 증가했고 총 외국인주민의 9.7%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10).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만 7세 이상 18세 미만인 학령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0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체류외국인 수가 1,208,544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 12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본 연구는 2009년 12월 말 일관되게 집계되어 통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는『2009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기초하여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다른 부처의 2009년 말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사용하고자 함.

2) 본 연구는 출생국이나 출생하여 성장한 출신국의 국경을 넘어 이주한 사람을 '이주민'으로 통칭하고, 이들 중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주민을 '이주노동자', 한국인과의 결혼을 위해 입국한 이주민을 '결혼이민자'로 정의함.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님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표기함. 그러나 정부의 공식문서나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문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따라서 본 연구는 법무부가 사용하는 '체류외국인'과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는 '외국인주민'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함.

기 아동 43,649명의 59.6%인 26,015명만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40.4%인 17,634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주민 자녀 가운데, 결혼이민자 자녀는 24,7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1.8% 증가했으나, 이주노동자 자녀는 1,27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9.4% 감소했고, 초등학교 재학생이 834명(65.7%), 중학교 재학생이 307명(24.2%), 고등학교 재학생이 129명(10.2%)의 순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09). 2009년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 자녀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강화된 불법체류외국인단속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미국이나 일본, 소위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자국인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2009년 총 46개(영미계 20개, 화교 18개, 기타 민족계 8개)로 총 10,993명(내국인 1,429명, 외국인 9,564명)이 재학 중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소위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은 자녀를 한국인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인학교는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외국인자녀들은 한국인학교에 겨우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중도 탈락률이 높다(이재분 외, 2009).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2008년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148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학교 밖 외국인주민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등록 이주아동일 가능성이 높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해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류에 대신해 '거주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모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므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이 아직 많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기회 평등은 물론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의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해 단속을 벌인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개정(2008)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중학교의 입학, 전학, 편입학에도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가위원회의 권고(2009)가 반영되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교사 등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충돌을 빚을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단속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법무부도 학생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연합뉴스, 2010년 8월 17일자). 그러나 현실적 최종 결정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교장이 한다. 따라서 입학을 허락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벌칙규정이 마련되고,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은 매우 제한된다. 더구나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마저 불안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녀의 본국 학력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나 서류작성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통역서비스 또한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입학 전 한국어를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교육기관마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종합지원대책을 표방했고, 2007년에 이어 2008년 6월에도『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다문화가족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가정아동의 학습발달과 역량개발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의 고교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대안학교인 다솜학교를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1곳(총 정원 200명, 학급당 30명씩 6개 학급)을 개설하여 2011년 4월에는 운영할 예정이고, 부산 유일의 다문화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를 학력 인정의 정규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다문화아동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통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사회에 맞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그 결과, 현행 정책은 대부분 결혼이민가정의 자녀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려는 특성을 지녔다(한승준, 2008 ; 정영근, 2009). 즉 이름만 '다문화' 정책이고, 실질적으로는 '등록된'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한국의 언어, 사회규준, 생활방식을 배워 한국인처럼 생활하라는 동화지원책에 불과하

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부분이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이 초등교육에 맞추어져 있어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중학교 이상 상급학교 진학, 진로지도, 자립지원, 취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없다. 또한 이들의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는 고무줄 통계로서 부처별, 기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이주아동정책은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외국인)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지원'과 '부모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이주아동 교육권의 국제적 기준

1) 이주아동과 교육권의 개념

(1) 이주아동의 개념

이주(移住)는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정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주아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설동훈 외, 2003 ; 김성천 외, 2008 ; 오성배, 2009 ; 이재분 외, 2009 ; 이은하, 2009)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이주아동을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진 만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참고로 2010년 10월 22일 김동성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은 이주아동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를 둔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정의한 이주아동의 개념은 연령, 이주경험, 교육경험의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 첫째, 연령의 기준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기초하여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본 연구의 목적인 이주아동의 공교육에서의 교육 실태 분석을 위해 국내에서 학령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만 7세를 기준으로, 학령 전기인 만 7세 이하 이주아동을 제외하고자 한다[3]. 둘째, 본 연구는 이주아동을 아동 본

3) 2009년 이주아동의 59.6%가 만 7세 이하 영·유아라는 사실(한국교육개발원, 2010)을 감안하여, 본 연구 결과와 연계된 후속연구는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인 또는 부모의 이주경험에 따라 결혼이민자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 난민 자녀로 구분한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자녀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아동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주아동을 중심으로 접근)에 따라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아동(이하 중간입국아동)과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 가운데 중간에 외국에서 생활하다 재입국한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는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를 말하며, 특정한 노동 관련 비자 소지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체류자격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적법한 비자를 가진 아동, 적법한 비자를 갖지 못한 아동,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아동을 포함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자녀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리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나, 현실적으로는 이주 배경과 경험에 따른 차별성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난민 자녀의 경우, 한국정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난민인정자 자녀로 한정하지 않고,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의 자녀로 규정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주아동을 교육경험에 따라 현재 한국의 공교육 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한국의 공교육 기관이 아닌 기타 대안학교나 대안시설과 같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진입하여 재학(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험이 있으나 이탈하여 현재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기관 어디에도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으로 구분한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는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새터민 아동도 이주아동에 해당된다. 그러나 새터민아동은 다른 이주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일반아동과 문화적・사회적 차이가 거의 없고, 한국어 또한 능숙하게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 자녀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서 성장한 아동도 학습언어로서의 한국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부 또는 모가 한국어에 능숙하고 한국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의 진입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적아동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출신 아동은 대부분 한국의 공교육 기관에 입학하지 않고도, 이미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며,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영어만 구사하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거나 공교육 접근의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아동들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정의하는 이주아동에 대한 작업개념(working definition)은 학령기인 만 7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주경험에 의한 언어적・문화적・사회적 차이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공교육기관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아동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경험이 있는 아동, 그리고 한국의 공교육 기관이 아닌 기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을 의미한다.

(2) 교육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1989 ; 이하 CRC)은 아동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하고, 정규적・비정규적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으로 구분된다(Save the Children, 1999). 이를 통해 CRC 제28조와 제29조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교육권은 발달권의 기본권이자 핵심권리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10조), 사회권(34조), 평등권(11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의 기초를 구성한다. 즉 교육권은 다른 인권들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리라고 할 수 있다. 손희권(2007)은 교육학의 관점에서 교육권의 법리를 교육기본법 제13조와 헌법재판소, 교육법학자, 헌법학자의 견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① 교육권은 그 근거를 헌법 제31조 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찾는 것이 타당함.
② 보호자의 교육권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권의 일부로 정의되어야 함.
③ 교육권의 내용은 선택권(교육을 받을 장소, 시기, 교사, 내용, 방법, 언어 등을 선택

할 권리), 요구권(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조건의 정비, 교육정보 등을 요구할 권리), 참여권(학생의 학교교육에 관한 개인 의견을 학교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포함.

④ 교육권의 성격은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⑤ 보호자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

⑥ 학생의 교육권은 보호자의 교육권, 교원의 교육권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

한편 곽한영(2010)은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법리적 해석에 기초하여 교육의 평등을 크게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과정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정은 학교진입(입학 또는 편입학을 통한 교육기회의 평등), 학교생활적응(교육과정의 평등), 학교이탈 또는 진학(교육결과의 평등)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UNICEF(2002)는 CRC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당사국의 교육정책에 필요한 조치를 분석하면서, 초중등교육기관에서 모든 아동에게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물을 포함한 교재, 교복, 시설 등의 무상지원은 물론 학교출석의 권장과 중도탈락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 교육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함께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3조에 기초하여 교육권을 '모든 아동이 초중등교육을 받을 기본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학교출석의 권장은 물론 이탈의 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 CRC 제28조와 제29조를 중심으로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 기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CRC는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시의적절하게 제공(provision)받아 사용하고, 위해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protection)받으며, 아동 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participation)할 기회를 가질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제공은 아동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는 것, 보호는 아동을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 참여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RC는 아동의 발달 특성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구분한다.

네 가지로 분류되는 아동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A・B협약 기준(UN, 1966)에 따라 즉각적 권리영역과 점진적 권리영역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안동현, 1999). 즉각적 아동권리는 즉시 이행되어야 할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으로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권리, 아동에게 차별과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독립적인 제도 아래 다루어지고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점진적 아동권리는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영역으로서 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여가권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교육권과 발달권 간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CRC(1989)가 규정하는 교육권의 내용을 분석하면,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교육과 빈곤, 교육과 건강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소득의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교육은 아동의 성격・잠재역량의 계발, 인권의 보장, 아동의 부모와 문화적 정체성・언어・모국의 가치는 물론 다른 나라의 문명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인종・민족・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의 이해,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자연환경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당사국은 CRC의 제28조 교육받을 권리, 제29조 교육의 목표, 무상의무교육, 인권교육은 물론, 제31조 휴식, 여가,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CRC의 총 54개 조항 가운데,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된 조항은 제2조(모든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모든 아동은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는 제외한다.), 제10조(아동이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아동은 부모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26조(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28조(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아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규율은 아동의 인격을 존중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29조(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아동은 교육을 통해 인권, 자유,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소수집단의 아동은 고유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이다.

이들 가운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교육권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8조와 제29조의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Hodgkin, R. & Newell, P, 2002)를 반영하여 교육정책의 분석틀을 구성하면 <표 2-1>과 같다(이혜원. 2010).

<표 2-1> 교육정책 분석틀

1. 목표 (기본 방향)	① 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② 이에 적합한 평가 지표가 책정되어 있는가? ③ 교육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기간이 설정되어 있는가?
2. 대상자 (접근성)	① 모든 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가(수급대상의 무차별원칙)? ② 초등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보장되는가? ③ 진로교육 등 다양한 중고등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는가? ④ 고등교육은 능력을 갖춘 모든 아동에게 접근가능한가?
3. 교육내용 (교육방법)	① CRC 제28조 보장의 필요성이 모든 국민에게 홍보되고 있는가? ② 출석의 권장과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③ 출석의 권장과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는 개별아동의 욕구를 반영하는가? ④ 체벌은 모든 학교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가? ⑤ 체벌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⑥ 학교규칙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CRC의 원칙과 일치하는가? ⑦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 욕구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가?
4. 행정조직	① 각 부처별 상설 담당국과 기관의 업무가 분담되고 상호 연계되고 있는가? ② 정부는 아동 관련 NGO 등 민간단체를 재정지원하고 있는가? ③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교육권 보장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④ 모니터링체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가? ⑤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가 확보되어 있는가?

5. 인력	① 담당공무원은 아동의 교육권 보장 관련 국제사회기준을 인식하고 있는가? ② CRC의 홍보를 위한 전문가교육훈련과 인식제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③ CRC 제28조와 제29조에 규정된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 대상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방법은 적합한가?
6. 법률체계	①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관련 법률 규정과 정책은 CRC 등 국제사회기준과 일치하는가?
7. 재정체계	① 아동의 교육권 보장 위한 예산이 책정되고 필요한 자원이 분배되어 있는가? ② 예산은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 질의 확보를 목표로 분배되어 있는가? ③ 초등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인가? ④ 초등교육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무상인가(교과서, 교복, 준비물 등 무상지원)? ⑤ 중고등교육은 무상인가? ⑥ 만약 중고등교육이 무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아동에게 중고등교육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가?

3. 해외 사례: 일본·독일·미국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사례연구[4)]

본 장은 한국사회보다 먼저 이주아동의 교육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독일, 미국의 사례를 선정하여 특히 이주아동의 학교진입의 장애 유무와 학교 진입 후 적응과정상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국가별 사례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

○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 수는 2008년 말 현재 221만 7,426명이며 이 가운데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5세에서 19세의 이주아동 수는 22만 1,336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함. 국적별로는 중국, 브라질, 한국.조선, 필리핀, 페루 순으로 많고

4) 제3장은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인 김미선 이사가 분담하여 수행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음. 따라서 각 국가의 사례별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0년 10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5천 - 1만 명으로 추정됨.

○ 일본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6세부터 15세까지 학령기 아동은 9년간 초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음.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약칭 입관법)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학교에서 온정과 배려 차원에서 취학을 받아들이고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2006년 제정 2009년 개정한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적 사안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상황, 소행, 내외의 제반 정세,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등이 고려될 때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더해 최근 민주당이 의회에 제출한 입관법 개정내용 중 학교의 신고의무 폐지가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됨.

2) 독일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

○ 독일 내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는 1,510만 명(2006년 현재)으로 전체 인구의 18.3퍼센트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0세 이하는 450만 명임.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독일 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1,000에서 3만명까지 추산됨.

○ 독일에서 학교/교육 입법은 연방주의 권한이고 주에 따라 6세에서 15세까지 9년간 혹은 10년간 의무교육 행해짐.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관련 법제도는 연방주에 따라 명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을 허락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혹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각 연방주에 따라 다름.

○ 독일 이민법(체류법) 87조는 모든 행정기관은 학교 이사회를 포함 미등록 이주민을 이민청에 신고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23조 a 에 명시된 '고충'(어려운 생계, 긴급한 인도주의적 혹은 개인적 근거 등 독일에 계속적인 체류가 필요한 경우)이 참작되면 체류허가주도록 함. 2009년 내무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으며, 각 연방주마다 이민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변경조치 들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중임.

3) 미국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

○ 미국내 이민자 수는 전체 미국주민 9명 중 한 명이고 학령기 아동 5명 중 한 명은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의 자녀임. 미등록 이민자 수는 약 1천 2백만 명이고 이 가운데 16퍼센트에 달하는 약 2백만 명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추산됨.

○ 미국 공교육제도는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총 13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2001년 개정된 연방법인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이민가정 자녀를 포함한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추가 학습기회 제공, 영어미숙학생(주로 해외출생 이주아동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의 자녀)의 영어능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학업성취에 노력함.

○ 미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1982년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취학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학 이상 교육과 그 이후의 진로에 장애를 겪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DREAM 법안의 입법성사 여부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등교육 진입과 관련된 체류합법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4) 해외 사례연구의 주요 정책적 함의

먼저 학교진입의 장애 유무에서 특별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과 출입국관리 규정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은 각각 출입국관리법과 이민법 상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대로 일본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실제 취학에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제퇴거의 불안에 떨지 않고 이주아동과 그 부모가 거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길 또한 제한적이긴 하나 열려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이 의회에 제출한 입관법 수정내용 중 학교의 신고의무 폐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관련 법제도는 연방주에 따라 다르고 이민법은 미등록 이주민을 이민청에 신고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고충'이 참작될 경우 체류허가를 얻는 방법이 있고, 2009년 내무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마다 이민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변경조치 들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2년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취학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대학 이상 교육과 그 이후의 진로에 장애를 겪고 있다. 역사적 경험, 체류자격과 그로 인한 향후 진로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소수민족 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졸업율이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입법추진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방안인 DREAM 법안의 입법성사 여부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등교육 진입과 관련된 체류합법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 무엇보다도 각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적 규정이 있음에도 체류자격에 우선하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이 선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표 2-1>에 기초한 국내 이주아동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이주아동교육정책의 목표 전환(“이주아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2) **이주아동교육정책의 대상자 확대(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급자격” 확대)**

3) **이주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내용의 개발과 교육방법의 효과성 강화**

4) **이주아동의 교육담당 행정조직 간 지역사회 차원의 네트워킹 강화**

5) **이주아동 교육담당 전담인력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제고와 전문성 강화**

6) **이주아동의 교육권(교육기회 · 과정 · 결과의 평등) 보장을 위한 법률체계의 실효성 강화**

7)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위한 특별예산 확보와 재정지원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

참고문헌

곽한영. 2010.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1); 1-26.”

국가인권위원회. 2008.『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2006.1.-2008.1)』.

국가인권위원회. 2009.『출입국분야 인권교육교재』

교육과학기술부. 2009.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

김성천・장혜림・안진경・이은하・유희원・이은주・김효수. 2008.『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법무부. 2010.『2009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손희권. 2007. “교육권의 법리”.『 교육법학연구』, 19(2); 49-78.

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안동현. 199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아동권리연구』 3(2) : 27-42.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문제 탐색”.『한국청소년 연구』, 20(3); 305-334.

이은하. 2009. “이주아동의 이해”『다문화강사 양성교육』

이재분・김혜원・오성배・이해영・노경은. 2009.『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원. 2006.『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_____. 2010. “아동의 권리와 이주아동의 지원”.『인천발전연구원 2010 제1차 여성정책워크숍 자료집』.

정영근. 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교육철학』44 : 113-137.

한승준. 2008. “동화주의 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 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9-126.

행정안전부. 2010.『2009 행정안전백서』.

황필규. 2009. 외국인주민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자율규제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연합뉴스. 2010년 8월 17일자. “불법체류자 자녀에도 중학교 입학 허용”.

Hodgkin. R. & Newell, P. 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m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Trainng Kit.

United Nations. 1987. Human Rights : Questions and Answers. Geneva : United Nations.

Save the Children Korea. 1999.「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제발표 2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종합보고 및 정책제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종합보고 및 정책제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1.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결과[1)]

이 부분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 학부모, 교사, 정책관련 공무원 및 이주아동 지원 민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다면적인 양적 및 질적 조사에 대한 종합보고이다. 다면적으로 시행된 실태조사의 내용을, 이주아동의 교육권이 한국의 공교육, 그 중에서도 진입과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취약점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분석, 요약하기로 한다.

1) 공교육진입(입학, 전학, 진학)단계에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실태

조사결과 이주아동이 한국의 공교육에 입학, 전학, 진학하고자 할 때 진입장벽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진입장벽의 존재는 이주아동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공교육 진입시까지 입학과정이나 기간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응답으로 드러났다.

(1) 공교육진입(입학, 전학, 진학)시 장애요인 존재 여부

먼저 이주아동이 한국 입국 후 학교 입학하기까지 걸린 기간으로 공교육 진입의 장애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입국 후 학교입학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대략 3개월 이내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인 4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아동들이 5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는 1년 이상 걸린 아동들도 19.8%나

---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프로젝트 결과보고에 게재되었다.

1) 이 부분은 이주아동, 이주아동의 부모, 교사들을 상대로 시행했던 양적조사결과를 기초로 석원정 공동연구원이 분석, 집필하였다.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집에 혼자(34.9%) 있었거나 지원단체(29.0%)에 다니거나 제 나이보다 낮춰 유치원(21.0%)에 다녔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물정에 서툰 이주아동들이 취학전 상당한 기간 동안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기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령기의 아동이 이처럼 방치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하고 있고,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 아동들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아동과 학부모의 한국어능력, 한국학교의 입학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아동의 비자(체류자격) 유무, 학교측의 거부 등이 장애요소임이 드러났다.

(2) 공교육진입(입학, 전학, 진학)시 장애요인 분석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로 학교진입시 장벽으로 작용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결과 자신의 한국어 능력부족 61.4%, 부모의 한국어 능력부족 50.9%, 비자 관련 34.3%, 입학절차의 이해부족 37.2%, 학교 측의 입학거부 15.2%로 나타났다. 입학의 장애물이 아니어야 할 부모나 자신의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입학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부모에게도 질문하였는데, 응답한 학부모의 39.6%가 자녀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9.8%는 비자가 없어서라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여러 모로 취약함을 안고 있는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였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항목에 따라서는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는 응답이 더 많기도 했다.

지원단체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도움은 입학정보(42.7%), 입학서류준비(39.6%), 모국어 통역자(37.5%), 비자문제(34.4%), 모국어로 된 학교안내책자제공(24.0%), 입학경비지원(13.5%)의 순이었다. 그런데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항목에 답한 결과를 보면 입학경비지원(64.6%), 모국어로 된 학교안내책제공(54.20%), 비자문제(49.6%), 모국어 통역자(38.5%), 입학서류준비(27.1%), 입학정보(19.8%)의 순이었다.

응답결과는 지원단체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항목과 도움받지 못한 항목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즉, 학부모들은 지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달리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적 기관인 학교로부터는 모든 종류의 항목에서 10% 미만으로 응답하여 현재의 학교시스템이 이주아동의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나 교육청, 혹은 일선 학교에서는 입학을 앞둔 부모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어능력과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아동과 부모의 한국어능력이 학교입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과 학부모의 한국어 미숙이 학교입학을 지체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한국어가 미숙한 사람이 아동인지 학부모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은 달랐다.

아동의 한국어능력은 현재의 한국교육체계에서는 수학능력과 직결되다보니 아동의 한국어능력이 부모의 한국어능력보다 학교입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아동의 비자 여부와는 무관하였으며, 중고등학교로 입학하여야 할 아동일수록, 한국인아동과 함께 수학하는 공교육기관으로 입학하려고 할수록 한국어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한편, 부모의 한국어 미숙은 부모의 교육역량과 직결되는데, 학교입학단계에서는 학교 입학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 한국어가 미숙하여 입학시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아동의 비자와는 상관없었으며, 부모가 대부분 미등록체류 상태인 이탈아동의 응답이 53.8%(21명)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고등학생일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공교육 진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어를 이주아동들은 어디에서 습득하였을까. 체계적인 언어교육시스템 속에서 학습하는 이주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주아동들이 입학전에 한국어를 어느 기관에서 학습하는지를 물었을 때, 체계적으로 언어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학교'라고 응답한 아동들은 질적 조사결과에서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나 대안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는 아동의 비자 유무와는 상관이 없었다.

입학전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이주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주아동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주아동을 지도 중인 교사들에게 이주아동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67명의 응답교사 중 64명이 예비한국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교배치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별도 교육기관에서 문화와 기본언어를 배우고 오는 것이 아동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주아동들을 지원하는 NGO 관계자들 역시 입학전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이처럼 이주아동의 한국어는 학교입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아동, 부모, 교사 등 교육의 3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입학전 한국어교육은 전적으로 개인과 민간단체에 맡겨져 있었다. 이주아동에게는 학교입학 후 이어질 학습을 고려하여 입학 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유아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정책대상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한정되어 있고 학령기에 처한 아동, 중간입국한 아동,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아직 아무런 정책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혹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정도의 정책만 세워져 있다.

(4) 입학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주아동의 공교육진입

입학절차에 대한 정보부족도 이주아동의 학교입학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주아동이 고등학교로 입학하여야 할 단계에서 더욱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고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입학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욱 요구되었을 텐데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비자가 없는 아동들에게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비자가 없음으로 해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한국어에 미숙하고 입학절차도 잘 모르는 학부모나 아동들이 어떤 경위로 입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입학절차를 밟을 수 있었을까를 알기 위해 부모에게 물었을 때 지원단체로부터 관련 정보와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비자가 없는 학

부모일수록 지원단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향후 교육관련 정보 및 도움을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학부모에게 물었을 때에도 학부모들이 지원단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 일반적으로 지원단체는 공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그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학부모들이 지원단체를 선호한다는 것은 곧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공시스템에서는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정부의 교육정책 중에는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방향은 바람직하되, 내용을 보다 종합적인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상에서도 학령기에 다다른 자녀가 있거나 학교입학 전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까지 정책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무관하게 부모가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국어 통역, 모국어로 된 안내지, 한국의 교육체계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학부모들이 비자 유무나 자신의 상황에 무관하게 안심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5) 비자(체류자격)와 공교육 진입

입학 당시에 비자(체류자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34.3%의 응답자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함으로써 비자(체류자격)가 이주아동의 학교입학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들 중 입학 당시 비자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은 아동들은 이탈아동들(52.5%)이었다. 다음이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31.7%)였으며 공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28.2%)순 이였다. 심지어는 비자가 있는 아동의 20%도 입학시 비자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비자관련 문제가 고루 나타났다. 이는 교육단계를 막론하고 입학시 아동의 비자여부가 매우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아동의 체류자격이 학교 입학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는 입학을 상의하는 아동의 신분확인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리고 학교측의 입학거

부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예측케 하고 있다.

(6) 학교측의 거부

학교측으로부터 아동의 전입학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5.2%의 이주아동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자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과 비자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 두 경우에서 모두 학교의 입학거부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아동 모두 학교 입학거부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학교측의 이주아동 입학거부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비자와 관련해서는, 현행 이주아동 전입학 관련 법령에는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증명서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적용조항이 아니어서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장이 거절하여도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부처나 지방교육청에서는 전입학거부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각급 교육청에서는 일상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접수되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때로는 관련 규정을 교육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에게 거주사실증명서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31.3% (21명)가 '모른다'고 답했다. 법적으로는 이주아동은 비자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사실증명만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 학교 관리자들도 있었다. 이런 학교들에서는 여전히 비자서류를 입학 서류의 하나로 받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들어본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런 학교의 경우 비자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아동은 입학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중앙부처나 지방교육청은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전입학과 관련하여 각 교육청들은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있었다. 가장 적극적인 교육청은 입학관련 안내문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거나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실제 이주아동을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했었던 교사들은 모르고 있었다.

학부모와 아동의 비자(체류자격)를 이유로 전입학이 거부된다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도 위배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좀더 분명하게, 아

동의 비자 유무와 무관하게 전입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학교측에서 이주아동의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조항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외국인'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이 이주아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거나 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와 함께 이주아동이 많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라는 권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측에서 거부의 주요 이유로 내세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 역시 한국의 교육여건이 이주아동을 교육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유가 일개 학교나 교사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교사들의 응답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다.

교사들은 학력신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성적도 공개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주아동은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학습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기는 했으나 점수와 관계되어서는 학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주아동이 시험기간에 결석을 하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학교측에서 거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교육현장의 여건이 충분치 않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것이 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몇몇 학교에서는 교묘한 이유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입학거부로 보아 조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입학에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교육 공무원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일선 학교에 맡겨두고 말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나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공무원의 관련 정책 인지 여부

조사결과 교육공무원만이 아니라 이주아동이 한국 체류와 관련 있는 공무원들 중에도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이 민간전문가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들의 체류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법무부의 경우 특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 외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이해도 역시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또한 주민 중에 이주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차이가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주민 중 이주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 A시나 이주아동을 위한 방과후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S구의 경우 비교적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거나 적은 지역, 혹은 그런 부처의 공무원들의 경우 관련 규정은 물론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조사결과는 공무원들이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교육 및 계도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2)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실태

초중고로 교육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주아동의 이탈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조사는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을 1) 이주아동 조력자 2) 이주아동들의 학교생활 지원욕구 3) 학습능력 향상욕구 4) 원활한 소통의 욕구 5) 경제적 지원 욕구 6)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에 대한 욕구와 학교적응 7) 한국어 학습지원 욕구 8) 이주아동 모국어 등 모국문화관련 욕구 9) 이주아동의 지도를 위한 정보제공 10) 이주아동의 또래친구관계 11) 따돌림 현상을 매개로 본 학교의 다문화, 인권감수성 실태 12) 이주아동의 미래설계와 교육의 12개 항목을 매개로 하였다.

(1) 이주아동 조력자

이주아동의 한국생활 조력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학교생활의 조력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주아동의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은 가족과 학교가 주로 맡고 있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거나 현재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동이나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양상이 달라져서 아플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만약 부모가 미등록 상태인데 출입국관리국에 단속되어 추방된 경우라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음을 예측케 하고 있다.

이주아동이 미래나 부모(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이어야 할 보호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는 것은 한국 내에서 이주아동의 보호 및 지지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동과 부모의 인터뷰 자료에서 혼자 남겨진 아동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는데, 현재 한국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 지지체계가 공적으로는 전혀 없는 형편이다. 친척이 양육하거나 잘해야 지원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이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학교 혹은 공익기관인 지원단체를 아동을 보호, 지지할 수 있는 조력자로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 및지지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주아동의 학부모들에게 누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조력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지원단체로부터 도움받았다'는 답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학교공부 보충지도, 경제적 지원, 생활상담, 비상시 후견인 역할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외국인으로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들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지원단체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시스템의 취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응답에 의하면 지원단체로부터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답도 상당하여 학교정보(18.8%), 학교공부 보충지도(17.7%), 경제적지원(49.2%), 학교생활상담(29.2%), 비상시 후견인역할(30.2%)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로서 갖춰야 할 교육역량의 측면에서 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에서는 2008년 발표한 '다문화가정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를 4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확정하고, 가족 단위 한국어・정보화 교육 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책자 발간・보급,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자원봉사 통역 도우미 운영 등을 세부실행계획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맞춤형'을 표방하고 있는 교과부의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이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보다는 시·도교육청의 조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의 단위 역량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이주아동들의 학교생활 지원욕구

구체적으로 이주아동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어떤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지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이는 순위대로 정리해 보았더니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1>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욕구

내 용	빈도(%)	1순위	
		교육형태	학교 급
1) 특기적성 교육(컴퓨터, 미술, 음악 등)	143(78.0)	대안교육	고등학교
2) 모국문화체험	138(74.6)	이탈	고등학교
3) 한국어 교육	138(74.2)	이탈	고등학교
4) 한국문화체험	138(74.2)	이탈	초등학교
5) 모국어 교육	133(71.5)	대안교육	고등학교
6) 학교에 내야 하는 경제적 지원 (급식, 수업료 등)	131(70.8)	이탈	중학교
7) 숙제 및 학습 보충	129(70.1)	이탈	고등학교
8) 나이에 맞는 학년 배정	122(66.3)	이탈/비자 無	고등학교
9) 모국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지/가정통신문	98(53.3)	이탈	고등학교
10) 모국어로 해주는 교육(성교육, 환경교육 등)	98(53.0)	이탈	초등학교
11) 방과 후에 생활을 도와줄 곳 연결	90(48.6)	이탈	중학교
12)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통역지원	80(43.0)	이탈	중학교

교육형태나 학교급에 따라 가장 먼저 필요로 느끼는 욕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한 질문을 부모에게 한 결과를 아동의 욕구와 병렬하면 다음과 같이 부모와 아동의 욕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표 2>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것의 아동과 부모의 비교

	부모(%)	아동(%)
1) 한국어 교육	94.8	64.5
2) 숙제 및 학습 보충	92.5	70.1
3) 특기적성 교육(컴퓨터, 미술, 음악 등)	92.6	78.0
4) 한국문화체험	91.5	74.2
5) 모국문화체험	90.3	74.6
6) 모국어 교육	88.5	71.5
7) 학교에 내야 하는 경제적 지원 (급식, 수업료 등)	86.1	70.8
8) 나이에 맞는 학년 배정	83.9	66.3
9) 모국어로 해주는 교육(성교육, 환경교육 등)	80.8	53.0
10) 모국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지/가정통신문	78.5	53.3
11) 방과 후에 생활을 도와줄 곳 연결	75.3	48.6
12)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통역지원	47.3	43.0

그런데 학교측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지를 보기 위하여 교사에게 물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표 3> 학교에서 이주아동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교사

	제공함	
	빈도(n)	퍼센트(%)
학습보충지도	50	74.6
경제적 지원	41	61.2
교과서	40	59.7
기초교과멘토링	37	55.2
문화체험 멘토링	35	52.2
한국어교육멘토링	30	44.8
준비물 지원	30	44.8
생활 학습 상담 멘토링	22	32.8
방학 중 집중캠프(학습특기적성)	18	26.9
모국문화배울수 있는 기회	15	22.4
이중언어교육	8	11.9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성,환경 등)	7	10.4
취업교육/취업정보 제공	6	9
모국어 가정통신문	5	7.5
모국어 통역 지원	5	7.5
모국어 학교생활 안내책자	3	4.5
교복	3	4.5

아동과 부모의 조사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한국어교육/특기적성교육/학습상담/방학캠프/숙제및학습보충/방과후기관연결 등은 학습능력향상욕구로, 모국어 교육/모국어로 하는 교육/모국문화 체험 등은 모국관련 욕구로, 모국어가정통신문/상담시 통역지원은 원활한 소통의 욕구와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욕구로, 교과서/교복 등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또한 교사들의 답변에서 나온 학습보충지도/기초교과멘토링/한국어교육멘토링/학습특기적성/문화체험멘토링/생활학습상담멘토링은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책으로, 모국문

화배울기회/이중언어교육/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 은 모국관련욕구에 대한 지원책으로, 모국어 가정통신문/모국어 통역지원/모국어 학교생활안내책자 등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원책, 또는 자녀지도를 위한 정보제공방법으로, 준비물지원/교과서/교복/경제적지원/취업교육,취업정보제공 등은 경제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류한 후 아동, 부모, 학교의 응답 중 같은 성격의 항목끼리 병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4> 학습능력 향상

	아동(%)	부모(%)	학교(%)
한국어 교육	64.5	94.8	44.8
숙제 및 학습 보충	70.1	92.5	74.6
기초교과멘토링			55.2
특기적성 교육(컴퓨터, 미술, 음악 등)	78.0	92.6	26.9
한국문화체험	74.2	91.5	52.2
방과 후에 생활을 도와줄 곳 연결	48.6	75.3	

<표 5> 모국관련 교육

	아동(%)	부모(%)	학교(%)
모국문화체험	74.6	90.3	22.4
모국어 교육	71.5	88.5	11.9
모국어로 해주는 교육(성교육, 환경교육 등)	53.0	80.8	10.4

<표 6> 모국어 안내지 및 통역지원

	아동(%)	부모(%)	학교(%)
모국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지/가정통신문	53.3	78.5	7.5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통역지원	43.0	47.3	7.5

<표 7>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

	아동(%)	부모(%)	학교(%)
나이에 맞는 학년 배정	66.3	83.9	

<표 8> 경제적 지원

	아동(%)	부모(%)	학교(%)
학교에 내야 하는 경제적 지원 (급식, 수업료 등)	70.8	86.1	61.2
교과서			59.7
교복			4.5
준비물지원			44.8
취업교육/취업정보제공			9

위의 통계들을 모두 아울러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온다.

(3) 한국어 학습 욕구

<표 9> 한국어 학습

	아동(%)	부모(%)	학교(%)
한국어 교육	64.5	94.8	44.8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아동,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매우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아동의 74.2%, 부모의 94.8%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주아동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지원욕구는 나이와 재학중인 학교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응답이 높았다. 특히 이탈한 아동과 대안교육기관 재학중인 아동들과 상급학교 재학 아동일수록 응답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공교육기관 재학 아동에게서는 응답이 낮았다. 즉, 이주아동과 부모들이 가장 중시하는 한국어 관련해서는 공교육기관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동과 학부모의 한국어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어느 정도로 한국어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교사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44.8%만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교육단계별로 보았을 때에는 초등학교는 51.1%, 중등학교는 31.8%가 한국어를 지도하고 있다고 답하여 초등학교가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조사결과는 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일단 아동과 부모의 욕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멘토링을 통하거나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체험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한국어 학습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주아동의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 전문 강사, 커리큘럼, 교재, 수업방식, 수업기간,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전문성, 체계성, 장기성, 안정성 등에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존의 한국어 수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대하여 충분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주아동의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과 교재, 강사양성, 수업방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도 아동의 한국어능력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습능력향상욕구

아동들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컴퓨터, 미술, 음악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재학중인 아동, 고등학교 재학 아동의 욕구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숙제 및 학습 보충욕구는 이탈한 아동들과 고등학교 재학 아동에게서 특히 많았다.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탈한 아동과 대안교육기관 재학아동이 엇비슷하게 압도적이었으며, 역시 고등학교 재학 아동에게서 많았다. 방과후 도움줄 곳 연결욕구에 대해서는 이탈한 아동과 중학교 재학 아동에게서 응답이 많았다. 한국문화체험에 대한 욕구는 이탈한 아동과 고등학교 재학 아동에게서 응답이 많았다.

부모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욕구가 높았는데 이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강한 기대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비해 학교에서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동이나 부모의 욕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가장 높은 비율이 숙제 및 학습보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이주아동에 대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배려가 많지 않다고 안

타까워하고 있었으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도 학습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인생이나 미래에 대한 멘토링도 더불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5) 원활한 소통의 욕구

<표 10> 모국어 안내지 및 통역지원

	아동(%)	부모(%)	학교(%)
모국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지/가정통신문	53.3	78.5	7.5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통역지원	43.0	47.3	7.5

모국어 가정통신문에 대한 욕구는 이탈한 아동에게서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엇비슷했으나 특히 고등학교 재학 아동에게서 좀더 많은 응답이 나왔다. 교사와 상담 할 수 있는 통역지원 욕구는 이탈한 아동에게서 높았으며 중고등학교 재학 아동이 엇비슷하게 높았다. 부모의 응답결과에서는 아동보다 오히려 욕구가 더 높았는데 특히 모국어 안내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런 반면, 단지 7.5%의 학교만이 모국어 안내지를 보내고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최소한 학교에서 보내는 통신문만이라도 모국어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한국어가 안되는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교과부에서는 학교생활 안내 정보책자 등은 발간하였으나,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서비스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각급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역의 NGO들이나 통번역기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모국어서비스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는 것을 보면 아직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모국어서비스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부모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각급 교육청 단위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결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취학중인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자녀들

의 학교생활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를 부모의 탓이나 부모들이 처한 상황의 한계로 돌리기보다 학교측에서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6) 경제적 지원욕구

<표 11> 경제적 지원

	아동(%)	부모(%)	학교(%)
학교에 내야 하는 경제적 지원 (급식, 수업료 등)	70.8	86.1	61.2
교과서	-	-	59.7
교복	-	-	4.5
준비물지원	-	-	44.8
취업교육/취업정보제공	-	-	9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 역시 아동, 부모 모두 높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은 그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원책에 비하면 풍성한 편이라고 하겠다. 앞서의 통계에서 이탈한 아동과 중고등학교 재학 아동이 경제적 지원욕구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는데,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비는 늘어나고 이주아동의 열악한 가정환경으로는 부담하기 힘겨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아동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장학금, 급식, 준비물 등의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과 같은 교육을 방과 후 활동 지원금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문화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아동으로 분류되면서 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1년에 30만원가량씩 배정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로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사실은, 비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외국인 지원정책에서 정책대상을 국제결혼가정의 2

세나 합법체류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없는 이주아동은 아예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학금이나 급식비와 같은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별도의 재원을 찾아봐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7)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에 대한 욕구와 학교적응

<표 12>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

	아동(%)	부모(%)	학교(%)
나이에 맞는 학년 배정	66.3	83.9	

한국어가 미숙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한 이주아동들은 대부분 제 나이보다 낮춰서 학년이 배정된다. 학교측에서는 이주아동의 학습수행능력을 감안하여 학년을 낮춰서 배정하고 있는데, 이 학년배정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당사자에게 많은 불만을 안겨주는 이주아동의 학년배정이 어떤 기준들로, 어떤 경로로 결정되는지, 그 결과가 이주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주아동들의 학년배치에 관하여 교사들에게 학년배정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한국어실력(98.5%), 학습능력(98.5%), 나이(94%), 본국학제(85.1%)의 순으로 고려한다고 나왔다. 이는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가 한국어실력과 학습능력이 학년배정의 기준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정작 아동의 학습능력을 가늠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주아동에게 적절한 기준이 없어 교사들은 이주아동의 학년 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낮은 학년배정에 대해 이주아동들의 66.3%,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과 이탈한 아동들, 비자 없는 아동들의 욕구가 높았는데, 부모들의 83.9%가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을 원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낮은 학년으로 배정된 아동(28%, 51명)보다 더 많은 숫자의 아동들(66.3%, 122명)이 적정한 학년배정에 동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설사 자신이 해당자는 아니더라도 나이보다 낮게 배정된 이주아동에 대해 아동들이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친구나 자기 또래의 이주아동이 자신의 학년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었을 경우, 혹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이주아동이 자신과 같은 학년에 배정되었을 경우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또래관계 형성이 원활치 않았음을 아동들도 느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낮은 학년배정은 이주아동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로 꼽을 만큼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공교육에 재학 중인 아동의 31.4%, 비자 없는 아동들의 30.8%가 낮은 학년배정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런 추세는 학교급가 높아질수록 높아져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이주아동들은 이 문제를 특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낮은 학년으로 배정된 이주아동 당사자와 부모는 적정한 학년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습을 지도해야 할 학교측에서는 한국어가 되지 않는 아동을 어느 학년에 넣어야 할지에 대해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주아동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하여 학습능력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고등학교 재직 교사들에게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아동이 한국의 기준에 따라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그 이유는 모든 나라의 언어 테스트를 준비하기는 어렵고,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이 무의미하며 우선 한국어 학업능력 평가 후에 그 평가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아이들의 수준과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수의 교사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주아동의 학습능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일개 학교나 일개 교사가 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각급 교육청에서는 우선 학령을 우선시하나 한국어능력이나 부모의 요청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학년을 낮춰 배정하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있는 학력심의위원회는 이주아동에게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한국어와 학습능력에 대해서는 학교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힘듦으로 교과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일선학교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교과부는 학적 생성 3년 미만 아동은 성적 평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어가 되지 않는 아동을 지도해야 하

는 교사의 부담과 아동의 낙인감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들 중에는 이 방안이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학업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도입국아동의 증가세 등 한국어 학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공교육 진입 증가세를 감안할 때, 이 방안이 교육적인지는 물론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이주아동 모국어 등 모국문화관련 욕구

<표 13> 모국관련 교육

	아동(%)	부모(%)	학교(%)
모국문화체험	74.6	90.3	22.4
모국어 교육	71.5	88.5	11.9
모국어로 해주는 교육(성교육, 환경교육 등)	53.0	80.8	10.4

모국어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아동들의 지원욕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욕구를 나타낸 영역이었다. 모국어학습 혹은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모국어 문화체험 등 모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이주아동의 정체성과 부모와의 관계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이에 대한 아동의 욕구가 의외로 컸었다. 이 중에서 모국문화체험이 가장 높았고, 모국어 교육욕구 → 모국어로 해주는 교육의 순으로 욕구의 순위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공교육에 재학중인 아동->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 →이탈한 아동들의 순으로 욕구가 컸다.

모국어 교육 욕구는 대안학교 재학 중인 아동과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서 특히 응답이 높았다. 모국문화체험의 욕구는 이탈한 아동과 대안학교 재학중인 아동에게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다. 모국어로 진행하는 성교육 및 기타교육에 대한 욕구를 교육형태별로 살펴보면, 이탈한 아동과 대안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서, 그리고 초등학교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모국어 관련이나 모국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욕구는 이주아동들이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국 언어와 문화를 잘 발달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가 중등학교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아주 강해지는데,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이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응답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모국어나 모국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부모들의 희망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국어도 모르고 모국 역사도 모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한편 이탈한 아동에게서 모국어나 모국관련 응답율이 높은 이유는 일단 공교육을 이탈한 후 한국에서 지내다가 본국으로 귀국한 아동들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난 바대로 본국적응에 많은 애로를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체류자격의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의 이주아동들은 자의든 타의든 본국 귀국을 삶의 계획 중의 하나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럴 때 모국어능력이나 모국 문화이해는 중요한 적응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주아동들이나 부모, 교사들은 아동의 정체성이나 미래를 위해서라도 모국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욕구도 높으나 정작 학교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프로그램 중 모국어학습이나 모국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저조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주아동들은 결국 귀국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주아동에게 모국어 교육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아동이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현재 이중언어교사가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보충지도를 하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모국어 관련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가능자를 양성하면 장차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그를 떠나서 이주아동 자신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주아동의 모국어 관련 프로그램들은, 현재는 이주아동의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고 모국어학습과 관련된 연구들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향후 모국어 학습과 관련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9) 이주아동의 지도에 필요한 정보(혹은 도움)제공

학부모와 교사가 이주아동의 지도에 필요한 정보나 도움들을 제공받고 있는지, 받는다면 누구에게서 받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이었다.

부모의 경우 64.6%가 자녀에게 물어보아서 정보를 얻고 있었고, 학교선생님 53.1%, 지

원단체 24.0%의 순으로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었다. 다수가 자녀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음은 부모자녀관계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오히려 낮은 수치라고 하겠다)이나, 한국교육문화나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적절하게 도움이 제공될지 염려를 갖게 하는 점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예, 예 하고 대답했어요. 가끔은 통역할 수 있는 친구도 데려갔어요'(F, 몽골, 남, 중3 재학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례가 있다시피 한국어가 취약한 학부모로서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사와의 면담, 가정통신문 등으로부터 자녀지도를 위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 NGO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원단체의 이주아동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원활한 소통의 욕구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모국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 및 가정통신문에 대한 욕구는 자녀 지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한편, 학부모만이 아니라 아동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에게도 지도를 위한 도움은 필요하였다. 교사들이 이주아동의 지도를 위해 어디에서 도움받는지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교사들이 이주아동의 지도를 위해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을 살펴본 결과, '이전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3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다문화연수를 포함한 교원직무연수(22.0%), 언론 영상/출판물(18.9%), 교육청(15.7%), 이주민 관련 지원단체(7.9%), 교육과학기술부(2%)의 순이었다.

교사들은 스스로들 말하듯이 이주아동이 학급에 있거나, 다문화 담당업무를 하고 있어야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우선 '이전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 밖에 매스컴과 지원단체 등을 통해서 얻고 있다. '이전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은 교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문화 연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다문화 담당자가 연수 후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등 이주아동 지도를 위해서 다문화 담당자 한 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들에게 다문화 연

수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연수는 원격연수, 집합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주로 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대학교, 교육부 지정 거점학교가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연수도 그 횟수와 교육 내용에 한계가 있어서, 교사들은 '비자만료'와 같은 법적인 문제와 '지원체계' 등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희망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이주아동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는 각각 자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자녀와 교사에게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받고 있었고, 교사들은 이전 담당자와 교사연수 등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지는 않아서 학부모는 풍부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받고 싶어하고, 교사들은 교육체계 내에서 아동의 지도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이주아동의 또래친구관계

아동들에게 또래친구관계는 아동에게는 사회적 지지망이 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네트워크의 기초가 된다. 이주아동들의 경우는 어떤지를 알고자 아동들에게 비밀친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국인친구 집에 얼마나 자주 놀러가는지를 물어보았다. 조력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긴밀한 친구관계를 살펴본 문항이었는데 한국인친구와 자국인친구, 외국인친구 중 비밀친구가 한명도 없다는 응답자가 상당히 있었다.

'한국인 친구(비밀친구라고 할 만한)가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대안학교 재학 아동의 58.5%가 하나도 없다고 답하였고, 그리고 비자 없는 아동이, 그리고 고등학생의 40%가 하나도 없다고 답하였다. '한국인 외 자국인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의 답변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어 공교육 재학 아동이 29.5%, 초등학생의 34.2%가 자국인 친구가 없다고 답하였다.

'한국인도 자국인도 아닌 다른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친구가 없다는 응답이 이탈아동 80.0%(32명), 공교육 73.3%(77명)에서 아주 많이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서 더 많은 응답이 나왔다.

다음으로 한국인 친구집에 놀러가는 회수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과 여러 형태의 만남이 있었을 텐데도 한국 친구 집에 거의 가지 않거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아동이 42%나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교육 32.4%(34명), 대안교육 75.8%(31명), 이탈아동 32.5%(13명)으로 나타났다. 대안교육 재학아동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비자가 없는 아동보다 비자가 있는 아동에게서 많았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한국친구집에 거의 가지 않거나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민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이주아동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또래관계에 대한 위의 응답결과는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이주아동들이 다양한 또래관계, 특히 한국인 친구와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깊은 연구와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따돌림 현상을 매개로 본 학교의 다문화, 인권감수성실태

이주아동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혹은 구성원들)의 다문화적, 인권적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따돌림 현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조사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차별의 경험을, 놀림 → 무시와 소외 → 물리적 표현의 단계로 발음놀림, 피부색 → 나라비하, 소문퍼뜨림 → 협박의 표현, 소지품 빼앗아감, 발로 차는 경우 등의 순서로 차별의 수위에 따라 표를 나열하였으며, 이 질문항을 교육형태, 학교급별로 비교해 살펴보았다.

발음놀림경험은 대안교육 31.6% -> 이탈 45% -> 공교육 45.7%의 순으로 높았고, 초등학교 37.2% -> 중학교 45.7% -> 고등학교 48.6%의 순으로 높았다.

이름이 아닌 출신국명을 사용하여 ‘야 몽골’ ‘야 베트공’ 이란 놀림을 받은 경험에 대해 공교육 재학아동의 31.4%, 중학교 재학아동의 28.6%가 가장 많이 응답했다. 피부색에 대한 놀림은 공교육 내에 있는 아동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에서 피부색 차별 경험이 많았다.

무시와 소외의 차별 경험으로 ‘따돌리거나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 없지‘라는 무시당한 경험은 대안교육 21.1% -> 공교육 41% -> 이탈 42.5%의 순으로 높았고, 초등학교 26.9% -> 중학교 44.3% -> 고등학교 45.7%의 순으로 높았다. 무시와 소외의 차별의 내용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근거림에 대한 경험은 대안교육 28.9% -> 공교육 30.5% -> 이탈 35%의 순으로 높았고, 초등학교 25.6% -> 고등학교 28.6% -> 중학교 38.6%의 순으로 높았다.

차별의 직접적인 행동표현으로 '돌아가'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경험은 공교육 아동의 22.9%, 이탈 아동의 20%가 경험했으며 고등학교 재학아동(25.7%)과 초등학교 재학아동(21.8%)이 높았다. 별의 직접적인 행동표현으로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긴' 경험은 공교육 재학아동의 10.5%, 대안학교 재학 아동의 7.9%가 경험했으며 초등학교 10.3%, 중, 고등학교 각각 8.6%로 경험했다. 차별의 직접적인 행동표현으로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인' 경험은 공교육재학 아동의 19%, 이탈아동의 12.5%, 대안학교 재학아동의 7.9%가 했으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의 순이었다.

차별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놀림은 공교육내 중,고등학교 내에서, 소외와 무시는 이탈 아동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경험했고, 차별의 직접적인 행동표현은 공교육 내에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내에서는 간접적인 차별교육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차별의 행동표현에 대한 주의교육과 이주아동들의 차별경험에 대하여 면밀한 관찰과 도움을 요청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차별경험들은 이주아동에게는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드러났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26.7% 49명의 아동들이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공교육아동과 대안교육 아동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고, 고등학생인 아동이 초·중학생의 두 배 정도 응답이 많았다.

그런데, 교사에게 학급에서 이주아동의 존재가 한국인 아동들의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77.6%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교사가 84.4%였고, 중·고등학교에서는 63.6%였다.

상당한 수의 이주아동들이 학교에서 차별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에는 도움이 준다는 것은 일견 모순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나, 일단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교육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다문화교육에서 다루는 문화가 협소한 의미의 문화로 인식되면서

‘다문화교육=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든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그 나라출신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데, 위의 모순된 응답이 소수자 존중이 함께 되지 않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2) 이주아동의 미래설계와 교육

이주아동과 부모들은 한국에서 어느 단계까지 공부하고 싶어할까. 그리고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동의 경우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단계는 대학교졸업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24.9%였다. 부모들은 대학교 졸업(31.3%)까지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희망하는 단계까지가 29.2%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자가 없을 경우 한국에서는 대학진학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학교 진학이 안되는 것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아동들에게 물었을 때, 24.0%의 아동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비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미래의 목표가 한국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이주아동 지원 NGO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주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어가면 비자가 없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설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강력한 동인(動因)이 사라진 이주아동들에게 공교육이탈은 유혹으로 다가온다. 거기에 이미 이탈한 자국인 친구들과의 어울림은 또 하나의 이탈유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관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아동 자신이나 부모들은 아동이 충분히 공부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학교를 이탈하여 취업하거나 그냥 비자 없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도 한다. 또는 한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 자진귀국하거나 자신의 추방 혹은 부모의 추방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하기도 한다. 그러나 귀국 후의 모국 적응 역시 아동들에게는 쉽지 않음이

귀국한 아동들의 인터뷰 조사에서 드러났다. 모국어나 모국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은 상태에서 모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아동들은 한국에서 대학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인터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이주아동들이 한국사회에 융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합법적 체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본다. 일정기간 학업을 이룬 이주아동의 합법체류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깊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공교육 이탈의 작용요인과 대안

(1)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야기하는 배경과 원인들은 무엇일까에 대해 알기 위하여 아동들에게 질문한 내용의 결과이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것 36.1%,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 30.2%, 학교문화 차이 28.6%, 낮은 학년배정 27.8%, 한국학생들의 무시 26.7%, 학교수업료 부담 25.2%, 상급학교 진학이 안 되는 것 24.0%, 경제적 이유로 취업 18.0%,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모국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서 14.7%와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은 '학교공부 따라가기 힘든 것'이었다. 특히 이탈한 아동에게서, 중학교 재학 아동에게서 뚜렷하게 응답이 높았다. 두 번째 이유인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을 꼽은 아동은 이탈 아동 55%로 월등히 높았고, 비자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비자없는 아동에게서 높은 응답이 나왔다. 세 번째 이유는 '본국의 학교문화와 한국의 학교문화가 다른 것, 즉 문화차이였다. 이탈 아동의 55%, 중고등학생 32%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낮은 학년배정에 대해서는 27.8%의 아동이 응답하였다.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항목에 대안교육 아동의 36.8%, 고등학교 재학 아동의 45.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수업료 부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공교육 재학아동, 비자 없는 아동, 고등학교 재학 아동이 높게 응답하였다. '상급학교 진학이 안되는 것'에 응답한 아동은 이탈한 아동 32.5%, 비자 없는 아동의 30.8%, 고등

학교 재학중인 아동 40%가 응답하였다. ‘경제적 이유로 취업’ 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은 이탈한 아동, 비자없는 아동,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이 높게 응답했다. ‘학교에 안다니는 모국인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서’ 에는 이탈한 아동의 30.0%가 응답하였다. 이는 이미 학교 밖 이탈아동이 있고 또한 이로 인해 또 다시 재학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결과로 학교 밖 아동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할 분석이 아닐 수 없다. 학교급별 응답에서는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의 응답이 초등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중학교 단계 이탈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와 달리 담임교사가 교실에 없어 교실안 급우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교사로부터 배려 받을 수 없고, 특히 사춘기를 겪는 시기이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단계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국인 친구가 있다면 학교 밖에서 어울리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미 이탈한 아동의 상당수가 학교 재학 중에 많은 갈등을 겪었음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탈한 아동들은 학교공부, 비자없는 외국인단속, 학교문화차이, 낮은 학년배정,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점, 경제적 이유 등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대안학교 아동의 경우 한국인들의 외국인 무시, 낮은 학년배정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비자가 없는 아동들은 외국인단속, 낮은 학년배정, 경제적 부담, 상급학교 진학문제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공교육 재학 아동은 학교수업료부담에도 많이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응답을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 중학교 이상의 아동들이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재학 아동이 중등학교 재학 아동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한 항목은 없었다.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인 중학교 때 아동이 이탈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주아동 이탈의 원인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

이주아동을 지도해본 교사들은 이주아동의 이탈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먼저, 이주아동이 결석할 경우 교사들은 부모사정/외국인단속(합쳐서 49.3%)가 결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학업흥미상실, 즉 학교생활 부적응이 결석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응답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이주아동들이 한국인 아동들과는 다른 환경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인 아동들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결석했을 때 교사들의 대처에는 사실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이는 중등교사의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주아동의 장기결석에 대하여 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위의 대답과는 반대의 대답이 나왔다. 장기결석은 공교육 이탈로 직결되는 중대한 현상인데, 그 주요원인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교생활부적응(학업흥미상실 25.4%, 교우관계악화 22.4%)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가 이주아동의 특수성, 부모단속 14.9%, 본국귀국 13.4%, 취업 4.5%이라고 응답하였다. 중등교사의 응답도 같은 비율이었는데, 학업흥미상실 40.9%, 교우관계악화 27.3%라고 답하여 학교생활부적응이 68.2%에 응답하였다. 즉, 중등학교일수록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떤 교육공무원은 외국인단속이 있으면 아동이 일주일동안 결석하기도 한다고 하여 외국인 단속이 비자없는 아동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를 종합하면, 교사들은 어쩌다 하는 결석은 아동의 가정환경을 포함한 이주아동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데, 장기결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실패가 보다 더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교사들의 파악 내용은 이주아동에 대한 응답결과와 맥락상으로는 일치하고 있다.

이주아동의 응답결과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첫번째가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고, 세 번째, 네번째가 '양국간의 학교문화 차이'와 '낮은 학년배정', 즉 또래관계 형성의 문제였다. 이어서 외국인단속, (비자로 인한)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점, 경제적 이유 등은 이주아동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데, 교사들이 학교생활 외적인 환경으로 꼽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결석의 이유를 교사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73.1%의 교사들이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조치가 없다고 답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평소 생활지도, 멘토링, 상담 등을 병행하면서 아동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대체로는 학부모에게 연락해보는 정도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 흔히 취하는 조치였다. 교사들의 응답에 의하면, 장기결석을 하는 아동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취하는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 이에 대하여 교사들은 이주아동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한국인 아동의 경우에도 특

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인터뷰에서 답변하였다.

그런데 학업흥미상실이나 교우관계악화와 같은 요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학교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하는 조치는 마땅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주아동만이 아니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3) 학업향상을 위한 방법

교사들이 장기결석의 이유로 가장 먼저 꼽았던 것은 학업흥미상실이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교사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았을까. 응답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예비한국어프로그램과 학업능력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각각 95.5%, 89.6%로 압도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역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주아동의 학습을 지도하는 데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교사들이 이주아동의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점은, 이주아동의 존재가 학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사들은 이주아동의 존재가 학급의 다문화감수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77.5%)고 보았지만 그를 제외한 행정처리, 교과진도, 반평균, 이주아동을 위한 개별지도(한국어, 교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하였다. 이 중에서 교과진도와 반평균은 곧 아동들의 성적을 의미하는데, 이 질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7.5%, 3.0%에 불과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서 보면 중등학교 교사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경우는 단 1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를 한국의 성적 위주의 교육풍토와 연결지어보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즉, 아무리 교사가 이주아동의 학업능력향상이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해도 일제고사로 학교를 서열화한다든지, 아동의 성적을 수치화하여 공개한다든지 하는 풍토에서는 이주아동의 지도는 처음부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고, 이주아동들은 결국 천덕꾸러기 혹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4) 특별학급구성(혹은 별도학교 지정)과 대안교육기관

그런 한편, 이주아동을 위하여 특별학급(필요하다 55.2%)나 별도학교 지정(필요하다 59.7%)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이 갈리는데, 이는 분리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는 특별학급이나 별도학교에 대해서 교사들이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이주아동의 지도에서는 큰 애로를 느끼고 있으나 그 대안으로 특별학급이나 별도학교를 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많은 교사들이 이주아동의 교육이나 한국인아동을 위해서는 통합교육이 적절하나 현재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차선책으로 특별학급이나 별도학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교사들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응답결과에서 별도학급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55.2%)보다 별도학교 지정(59.7%)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좀더 많았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별도학급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현재 별도학급구성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별도학급은 한국인이 아닌 아동들을 나이와 국적(사용언어)에 무관하게 한 반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교사들은 이런 형태의 별도학급보다는 별도학교가 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별도학급이나 별도학교와 달리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이탈하거나 아예 진입에 실패한 이주아동들은 대안학교를 찾아가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이주아동 지원 민간 전문가들은 아무 교육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하면 대안학교에서라도 교육을 제공받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님은 분명하기에 이주아동 지원 민간전문가들은 대안학교에 대해 조건부 인정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불가피한 면도 있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조사했던 아동들의 또래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학교생활 지지망이면서 동시에 장차 사회적 지지망으로 기능할 네트워크의 기초가 될 또래관계에서 대안학교 아동들 58.5%가 한국인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가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75.6%가 한 번도 혹은 거의 가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이주아동이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대체로 불가피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장차 생활해야 할 아동의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대안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단시간에 부모나 본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아동의 학교이탈은 대체로 이주아동의 귀국으로 마무리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이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을 교사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주아동의 장기결석과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적 위주의 학교분위기는 이주아동을 방치 내지는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아동 중심의 학교로 변화시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공교육기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별학급구성이나 별도학교 지정, 나아가 대안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완책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부모(혹은 아동)의 단속과 추방과 이주아동의 교육권

이주아동의 부모들은 많은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정하다. 중간입국아동의 부모라고 해도 한국인과의 이혼과 같은 이유로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 절에서는 부모나 아동의 체류자격이 아동의 교육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았다.

(1) 체류자격이 일상 교육과정에 끼치는 영향

불안정한 체류자격, 즉 비자가 없는 것이 불편함을 끼치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입학, 진학, 상급학교 진학할 때'였다. 대안교육 아동의 68.3%와 이탈아동의 67.5%가 불편하다고 답하였고, 중학생(52.8%)과 고등학생(48.6%)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비자 없는 아동의 52.3%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홈페이지 가입시'라고 응답한 아동은 이탈아동(42.5%)과 공교육재학 아동(37.6%)에게서 높이 나타났고, 중고등학생과 비자없는 아동의 5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 급식통장 만들 때'라고 응답한 아동은 이탈아동, 비자없는 아동,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게임을 할 때' 라고 응답한 아동은 이탈아동과 공교육 재학 아동이 엇비슷하게 높았으며, 고등학생과 비자없는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자주 이사해서’ 라고 응답한 아동은 공교육 재학아동과 이탈한 아동이 엇비슷하게 나왔고, 고등학생과 비자없는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가까운 사람이 단속되는 것’이라고 답한 아동은 이탈아동과 공교육 재학 아동이 비슷하게 높게 나왔으며 고등학생과 비자없는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위의 응답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비자가 없는 아동이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이 눈에 뜨인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이탈한 아동에게서 높은 응답이 나왔음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전입학과 진학시 비자가 문제됨은 이미 알 수 있었거니와 학교 홈페이지 가입, 급식비 통장, 인터넷가입처럼 한국아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비자가 없음으로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민간 전문가들은 비자 없는 아동들이 비자가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체감하는 시기가 빠르면 초등학교 5-6학년, 일반적으로는 중학교라고 한다. 그리고 대체로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급식비이나 학교 홈페이지 가입할 때라고 한다. 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아동들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체류자격을 비밀로 하기도 한다. 체류자격을 비밀로 한다는 것은 곧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역시 비밀로 하고 있음을 뜻한데, 그러다 보니 이주아동들은 자연히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된다고 한다.

부모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였을 때, 단속으로 인한 불안정이 89.5%로 가장 높았으며, 입학,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에 84.1%, 은행거래 등 영향이 83.0%, 안정된 학습환경 영향이 78.5%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체류자격이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동과는 비교할 수 없게 높은 응답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강도가 다른데, 공교육재학아동의 부모와 초등학생의 부모는 입,전학, 상급학교 진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고 비자가 없는 부모가 더욱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학교에서 아동의 비자를 확인하는지를 교사에게 질문하였더니 20.9% (14명)의 교사가 비자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면 교사들은 왜 비자를 확인해야 했을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규정(64.3%), 경제적 지원(14.3%), 상부의 요청 (1.5%)라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학교규정에 대하여 일부 교사는 입학서류 또는 입학절차로 비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현행법이 거주사실증명서만으로도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관행상에서는 여전히 입학서류 또는 입학절차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동의 비자(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면 자연히 알게 되는)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학교 전입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NEIS 등록, 장학금지급, 급식비 지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예방 접종,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계좌, 교육사이트 가입, 수학여행갈 때 보험가입, 문화바우처 제도 이용시 등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이처럼 많은 경우에 비자없는 아동들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경우 이주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는 학교의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NGO나 민간기관과 연결하여 아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현행법과 상충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아동의 체류자격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는 용인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일선학교가 아닌 윗선에서 제도적으로 비자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비자가 없는 이주아동은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비자 유무를 밝힐 것을 요구받는다. 개인 신분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국사회에서 비자가 없는 아동들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걸림돌을 체험하게 되고 불이익을 겪게 된다. 교사 역시 아동의 원활한 학교생활이나 지원을 위해서 아동의 신분번호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 이는 비자 없는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변비밀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다. 나아가 비자가 없음으로 해서 아동으로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사회서비스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한다. 그것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이탈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됨은 이미 앞서의 응답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서 비자 유무, 한국적 유무에 무관하게 아동들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등록시스템 구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비자없는 이주아동이 한국사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올 길은 전혀 없고, 그것은 이주아동이나 한국사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비자없는 부모의 단속/추방과 이주아동의 교육권

비자없는 외국인의 단속과 추방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부모나 아동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며 고통이다. 비자없는 부모의 단속(혹은 추방)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영

향을 끼치고 있다. 아동이 보호받고 교육받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일차적 조건인데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비자없는 외국인단속이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떻게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사는 지역에 비자없는 외국인단속이 있을 경우 부모의 태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아동의 34%가 부모가 단속에 대해 신경 쓰면서 아동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단순히 자제를 넘어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있을 때 학교를 포함해 외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학교는 보내지만 외출은 자제시킨다는 경우가 6.5%(12명)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부모도 있다고 답했다. 이탈아동의 부모(50.5%)가 단속 당부에 대해 가장 높았고, 외출을 못하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대안교육에 재학중인 아동(7.3%)이었다. 학교를 포함해 외출조차 못하게 하는 부모가 공교육내에서도 있었다.

한편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정도의 반응은 중학생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를 포함해 단속을 못하게 하는 부모가 중학교내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응답아동 186명 중 비자가 없는 아동들은 62%(114명)이었는데, 단지 34% 정도의 부모만이 주의를 주고 있었다. 이는 아동이 비자가 없더라도 단속에 관해 부모 모두가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은 비자와 관련해 잘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때로는 비자가 있는 아동이라 해도 지역에 외국인단속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 경우 부모는 혹시 자녀가 자칫 좋지 못한 일에 휩쓸리게 될까봐 주의를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설사 아동 본인은 무관하더라도 부모가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매우 위축된 상태가 된다. 때로는 아동이 아무 문제없어도 부모가 자신의 단속이 두려워서 아동의 외출도 막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2.6%가 강도는 다를 지언정 단속에 관해 아동에게 언급하고, 17.9%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학교에 안보내거나, 외출을 금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 자신이 비자가 없는 경우, 이탈한 아동의 부모가 단속에 대해 자녀를 조심시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단속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속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님이 부모의 인터뷰에서 드러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할까봐, 혹은 말이 씨될까 봐(현실화될까봐)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기도 한다.

또 다른 부모들은 자신의 단속으로 자녀가 홀로 남겨질까봐 염려스러워 '아빠엄마가 잡혀가면 집에서 문 잠그고 혼자 있어라, 어떻게 해라'는 등으로 평소에도 자녀에게 일러주곤 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혹시 부모가 단속되어 본국으로 추방당하면 아동은 한순간에 보호자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처럼 비자가 없는 아동에게 외국인단속은 본인이 단속의 대상이 되든 안되든 몹시 위축되고 긴장되게 하는 사건이고 이는 아동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앞서의 응답에서 이미 드러났다.

조사결과 자신이나 부모가 비자가 없는 아동에게 비자는 교육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비자 유무에 무관하게 거주국가는 아동이 교육받고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2006년에 미등록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한시적으로 합법체류 조치를 취하였다. 그 기간은 2008년 2월이 최종기한이었고 그 이후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 비자 없는 아동과 부모에게 합법적인 비자를 부여해주는 문제는 일국의 이주정책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미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정부의 깊은 검토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부모의 추방으로 남겨진 아동의 상황

이주아동의 부모가 비자가 없어서 외국인단속으로 추방당할 경우 남겨진 아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한국사회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현재까지 부모의 단속추방으로 남겨진 아동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에 대해 조사된 적도 없었다. 다만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경험이 있는 부모와 아동들, 그리고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일부 NGO 활동가들과 주변인들의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단속되어 홀로 남겨진 아동이 적지 않게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자신의 단속된 후 추방되기 전에 아동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동의 진로에 대해 서로 상의를 한다든가 최소한 남겨진 아동을 누구의 보호를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변인들과 상의할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때때로, 비자 없는 부모가 단속되는 시점, 혹은 단속되어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자신에게 어린 자녀가 있음을 고지하는 사람들이 추방경험자들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고지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의 반응은 아동 역시 데려와서 함께 출국하라고 하거나 묵살하거나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단속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전화연락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보살필 어른이 주변에 없어 결국 자녀도 함께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다가 부모와 함께 추방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은 부모는 자녀 역시 법무부의 단속망에 걸릴까봐 아동에게 부모의 추방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였고 부모자녀가 서로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한편, 직접 자신의 경험은 아니더라도 64.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부모의 추방으로 홀로 남겨진 아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 아동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42.6%의 아동이 아동도 귀국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는 아동이나 부모의 인터뷰 자료 중에도 부모의 단속추방으로 홀로 남겨진 아동도 결국 한국생활을 갑자기 접고 본국으로 귀국하였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NGO 전문가는 '부모가 단속추방되면 남겨진 아동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동 역시 귀국하게 되고 그 귀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경험담을 알려주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이나 부모의 체류자격은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동이나 부모가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위협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부모의 단속과 추방은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주요 요인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단속 이후 추방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조치도 취할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동의 안전과 교육에 위협이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서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부모가 추방되었을 때 남겨지는 이주아동의 안전과 교육을 위한 보호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정적이지 못한 교육환경은 결국 이주아동의 교육과정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UN 아

동권리협약에 의하더라도 옳지 않다. 이에 대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아동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적 후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사 부모가 단속된 상태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의 면접, 자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의 추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이 비자없는 외국인 단속을 할 때 이주아동을 단속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주아동을 단속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미성년인 이주아동을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의 인터뷰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들끼리 다툼이 생기거나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연행된 후 비자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본국으로 추방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또 성인을 단속하는 현장에 미성년자가 있다가 함께 단속되거나, 학교를 이탈한 후 취업한 상태에서 단속반이 들이닥쳐 단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미성년자이지만 출입국관리국은 추방조치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이 아동의 부모형제가 엄연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그들이 미등록체류 상태이면 아동의 추방을 속수무책으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처럼 미성년인 아동을 홀로 추방시키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명백하게 위배되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단속되어 추방되는 이주아동의 추방의 과정은 어떨까. 단속된 비자없는 외국인들은 모두 외국인보호소에 일시 수용된 후 귀국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강제출국한다. 출국 당일 외국인들은 둘 혹은 여러 사람의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차량에 태워져 인천공항으로 이송되며,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수갑을 차고 대기해야 한다. 그런데 아동 인터뷰 사례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아동들도 성인들이 수용되는 보호소에 함께 수용하고, 출국을 위하여 이송할 때 어른들과 함께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등 성인들과 똑같은 과정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였다는 사례도 있다.

비자 없는 아동을 성인과 함께 보호소에 수용하고, 수갑을 채워 강제로 추방하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처우는 명백히 UN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그런데 미등록 체류외국인의 단속추방과 관련하여 한국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의 경

우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는 강제퇴거 대상자 중 하나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를 두고 있을 뿐이다. 즉, 미성년인 자를 어떻게 처우하는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인 대상자를 성인과 똑같이 처우하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실수로라도 법을 위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예외를 두는 단서조항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아동의 경우 단속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을 우연히 단속하였다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면 부모나 교사 혹은 아동이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국시키거나 성인과 같이 보호소에 수용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5)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이주아동의 교육권

출입국관리법 제 84조 공무원의 통보의무[2]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특히 인권침해를 당한 비자없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의 공적 시스템 내에서 인권침해구제를 요청하는 길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었다.[3] 이는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관련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교사들의 62.1%, 36명이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

2)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0.5.14]

3) 한때 권리구제나 인권침해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통보의무를 유예한다는 단서가 지침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지침은 사라졌다.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나 고위 교육직 공무원들은 없었다. 심지어 법무부조차 교육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법령에는 엄연히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껄끄럽게 여기는 교사들은 있었다.

이 통보의무조항은 설사 실현되지 않고 있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이 교사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먼저, 교사들의 자기검열, 아동의 교육권과 자신의 의무를 놓고 잠시 고민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보의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상충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이주아동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동이 미등록체류자일 경우 추방당할 우려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도 했으나, 만약 어른이라면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이주아동의 학부모일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학교에서 이주아동의 부모를 당국에 고지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공무원으로서 처한 미묘한 이런 상황은 비자없는 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와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어떤 학부모는 학교에서 아동에게 물품을 지급한 후 학교로 연락달라는 자녀의 전갈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지원단체를 찾아가 학교에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은 결국 자신이 불시에 단속되어 추방될 즈음에도 아동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세 번째, 비자없는 외국인단속이나 부모의 단속으로 위축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한 이주아동을 위하여 학교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단속, 추방되어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질 경우에도 부모는 담임교사에게는 물론 아동에게조차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아동이 졸지에 보호자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학교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어떤 교육청 담당자는 그런 조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어떤 교육청 담당자는 비자없음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어떤 교육청 담당자

는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통보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어떤 교육청 담당자는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교육할 수 없으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범죄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실제 규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종합하면 각급 교육청 담당자들은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대해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학교현장에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교육현장에서는 통보의무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인 2010년 8월 17일 '미등록체류 아동의 중학교 진학시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를 적용'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비록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비자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의 학교입학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학기술부나 각급 교육청의 명쾌한 반응과 달리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 조항을 인지하는 교사들의 긴장감과 고민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이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실생활에서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조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배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면책됨이 명기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다. 어차피 실현을 강제하기 힘든 조항이라면 분명하게 특정 업무의 공무원들에게는 유보 혹은 면제 조항을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갑작스런 이유로 보호자 부재의 상황에 처한 아동을 위하여 지지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에 기초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4)]

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교육행정서비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연계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4) 이 부분의 집필자는 이경숙 연구보조원이다.

한다. 이주민의 경우 거주국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국인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행정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지역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콜센터나 민간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정보나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출신국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공교육 접근과 관련해서는 담당기관, 위치, 절차, 소요기간, 구비서류, 필요서류 구비 방법 등 내국인의 경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5]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역지원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2) 모든 이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접근성 보장

미등록 신분의 이주민은 그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모든 공무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할 시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공무원에 한하여 업무 중 미등록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보다 폭넓게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이주아동이나 부모의 체류지위를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통보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3) 모든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체류지위와 관계없는 동등한 교육권 보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2003)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9)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 교육부는 전입학 관련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을 개정하였고, 지난 8월에도 입법예고를 통해 중등학교까지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5) 유엔 교육권특별보고관은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이주민 인구 필요에 따라 이주민의 언어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A/HRC/14/25)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이주아동이 학교측의 입학 거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에 외국인에 대한 편견의 영향, 미등록 지위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학교 내 제반시설 및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의 제한 혹은 폐지,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여건의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을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 적정한 학년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예비 한국어교육 제공

이주아동이 공교육 진입 후, 나이에 맞지 않는 학년배정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육당국은 각 급 학교의 학력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는 있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은 정립되지 않고, 현장에서도 이 기준은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교사들은 대부분 한국어 실력과 학습능력을 학년 배정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었다. 교육관계자들은 이러한 학년배정 관행을 나이에 따른 학년배정과 한국어 실력의 불일치가 크고, 학급 차원에서 이주아동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다. 이주아동의 적정한 학년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적정한 학년의 교과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한국어교육프로그램 등 별도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발과 체계 마련

이주아동 학부모들도 자녀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장애를 우려하여 공교육기관에 입학시키는 대신 지원단체의 한국어 교실, 유치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학교 입학 이후에도 아동의 미숙한 한국어는 학습을 어렵게 하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총체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일선 교사들에게도 이주아동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은 학습 지도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아동을 지도하는 교사 개인이나 각급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배정학급에 편입되기 이전에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까지 별도의 한국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체계없이 각 급 학교의 역량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에서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사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아동들은 성인대상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여러 특성과 또래간 역동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국어 교육 경험은 아동에게 한국어 습득에 흥미를 잃게 하고 학교생활이나 한국생활 전반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 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이주아동의 다면적(다중적) 정체성 유지와 장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이주아동들은 특기적성교육과 함께 모국어 교육과 모국문화체험 등을 학교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했다. 학부모의 경우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학습지원욕구가 단연 높았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인해 언젠가 다가올 자녀의 본국 귀환에 따른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단속과 강제퇴거에 따른 귀환 대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주민이 가진 다중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 발달시키는 것을 국제인권기준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보고 있다. 이주아동의 전인적인 발전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생활을 비롯한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발달시키고, 정체성 유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교육 제공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역량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 계획은

아동의 나이, 한국어 능력, 발단단계 등 개별적 특성과 출신국, 체류자격, 본국 수행 학업 이력 등 이주배경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0년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유아지원과 중도입국자녀 지원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여전히 국제결혼가정 배경이 아닌 이주아동의 특수성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교육은 일회적, 단기성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현장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개선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이주아동의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학교 밖 이탈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포함하여야 한다.

(5) 이주아동의 학업 중단 예방책 마련

이주아동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응답에 따르면 이주아동들은 이주배경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학업흥미 상실로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흥미 상실이 결석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아동 조사에서도 학교를 이탈한 아동과 중학생 아동이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점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 꼽았다. 이주아동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고,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이주아동들은 이주자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당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 이유 등이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이주아동들의 장기결석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해지고 있지 않았다. 교사들에게 이주아동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이 한국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학교안과 밖에서 이주아동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습을 장려할 수 있는 연결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1) 아동 권리에 기반한 이주아동정책 수립

이주아동은 이주배경을 가진 특성과 아동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 이주아동은

아동의 특성상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주배경에 따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아동이 갖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주아동의 권리는 성인이주민과 동일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유엔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도 이주정책의 일반적 원칙이 이주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기저로 이주아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2) 이주민 지원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처우를 규율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적용대상을 등록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이주아동의 보육, 교육, 의료 지원을 내용으로 한 이 법은 그 지원대상을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

(3) 출입국 관리와는 별도의 행정등록체계 마련 방안 강구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학교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나 권리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전입학시, 교육행정시스템(NEIS) 등록시 확인과 입력을 요구받고, 급식비 지원, 문화바우처 이용, 수학여행시 여행자 보험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이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신분이 노출될 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교육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있지 않는 바, 교육 및 사회서비스 본래 취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국 관리와는 별도의 등록체계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규정 신설

강제퇴거한 이주 아동들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부모 면접이 허용되지 않았고, 차량으로 이동되는 동안 수갑을 찬 채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제퇴거한 부모들도 단속시에 보호소로 이동 전에

미성년 자녀를 면접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미등록인 자녀마저 단속하여 강제퇴거 조치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처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자녀를 포함한 보호 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단속, 보호, 강제퇴거의 일련의 과정은 인신 구속 상황이자, 얼마간의 일상적, 법적 생활의 청산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생활조력자나 법적 후견인의 지정, 귀국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가족결합권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이주민특별보고관, A/HRC/11/7) 이 때 학습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기간에 대해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5) '가족결합권'의 국내적 수용 고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원칙에 따라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도 이주정책에 있어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가족재결합권의 원리가 고수되어야 하고, 아동이나 그 부모에 대한 귀환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은 늘 이주노동정책의 입장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 가족결합권은 입국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초청을 허용하는 문제로 한정되어 좁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차원의 논의에서는, 이주노동정책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미 국내 체류중인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으로서 한정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 전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가족결합권의 수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6) 이주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한국어가 미숙하고, 한국제도를 잘 모르는 이주아동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이나 일

상생활을 위한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미등록 외국인 단속으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단속에 따른 강제퇴거로 아동 혼자 한국에 남게 되는 경우, 아동의 안전한 생활과 교육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7) 공무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정부의 이주민정책(외국인정책)은 체류지위에 기반한 동화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의료와 교육분야에 있어 시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이주민의 상황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전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난민, 이주아동 등 각 이주민의 특수성을 교육하고, 전입학, 단속 및 강제퇴거 조치 등 이주민 관련한 원칙과 국제기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인권에 기반한 다문화교육의 확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중복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주아동들이 가난한 나라 출신, 피부색, 어눌한 한국말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을 받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타국의 상이한 문화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 교육의 내용을 담지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이 규모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확대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발표 1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정책 현황

박재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정책 현황

박재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은 보편적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며, 교과부도 국제협약 등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령을 정비 등을 통해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은 교육기회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과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적·물적 인프라 및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1. 국내 취학 외국인 아동 현황

’10년 기준으로,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는 1,748명(외국인학교 등 재학자는 미포함)으로, 전년 대비 37.6%가 증가하였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비율이 높아 각각 초 62.9%, 중 25.5%, 고 11.6%이고, 지역별로는 서울(39.7%), 경기(28.0%), 인천(7.6%), 부산(5.3%) 등의 순이며, 부모 출신국적별로는 몽골(20.8%), 중국(19.0%), 일본(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2009	834	△15.0	307	△2.2	129	20.6	1,270	△9.4
2010	1,099	31.8	446	45.3	203	57.4	1,748	37.6

다만,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 신분 등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이들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현황 등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관련 규정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관련하여, 우선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6]을 통하여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음. 다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자녀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조항에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이주노동자 자녀 등 외국인 아동의 취학과 관련한 조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7]이 있음. '08년 2월에 UN 아동권리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외국인 아동(미등록 포함)의 초등학교 입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동 조항을 개정한 바 있음.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등에 전·입학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는 동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였음. 현재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국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이 가능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92조는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8]

---

6)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아동 관련 교육 지원

1) 미등록 이주아동 등의 입학 절차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절차를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 개선을 '10년 초에 권고한 바 있음.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기본적인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취학 절차를 초등학교 입학 등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임.

2)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외국인 아동의 취학 증가로, 이들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이주 학생 밀집학교 등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지정하여 학습 환경 구성 및 교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특별학급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수업(국어, 사회 등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이 진행되며, 일반 학생과의 공동 활동 등을 위해 예·체능 과목 등을 중심으로 일반학급과 통합교육과정을 병행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부모 출신국의 언어·문화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교육을 함께 지원하고 있음.

---

8) 일각에서는 동 조항으로 인해, 외국인 아동 등의 취학이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 체계에 따르면, 중학교·고등학교의 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일반 학생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외국인 아동에만 특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조항은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후 배정 등을 통해 입학하는 것이 아닌, 배정 이후 또는 학기 중간에 입학, 전학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학교에 보다 자율성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3)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

교과부에서는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09.11월)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 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9]하였음. 또한, 대안학교 설립 주체를 지자체 등까지 확대하여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음.

이러한 대안학교 등을 통해, 일반 학교에서 적응 및 통합교육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자녀 등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음.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교과부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방과후 한국어반, 기초학습 지도 ·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 일반가정 및 교사와의 결연을 통한 멘토링, 캠프 등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학생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다른 나라와 역사, 문화 등을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이주가 늘고 있는 아시아 국가(베트남, 필리핀 등)의 문화·사회 이해 등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이주민 등의 사회 활동 참여 제고 및 일반인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어 · 모국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을 선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서 방과후강사 등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주노동자 자녀 등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 출신국의 언어·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단위의 노력을 제고해 가고 있으나,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가능 인력 등의 접근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는 데

9)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 등이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한 경우에도 대안학교 설립 인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접근은 출신국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 체계 및 방식을 다원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봄.

5. 기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도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학 기회를 확대한 측면에서, 외국인의 권리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더라도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고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령을 통해 절차 등을 완화되었다고 해도, 체류 신분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령기 아동이 취학하고 교육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련 규정[10]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 등이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따라 입학 등을 지원하면서도 법령간 일부 상충되는 내용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임.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의 부여, 외국인·체류자격 관리상의 의무 등은 소관부처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10)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책발표 2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이민정책

이동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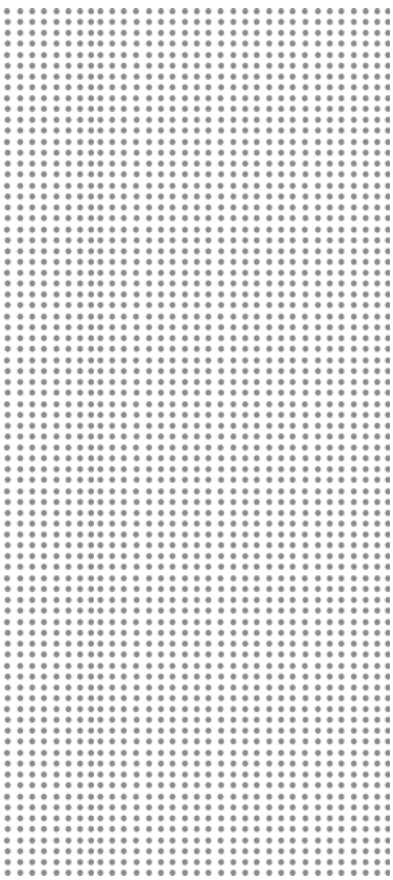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이민정책

이동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1. 들어가며

UN아동권리협약 발효 20주년을 맞아 국내 불법체류 아동의 교육권 문제가 학계, 정치인, 언론계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교육당국의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선 요구문제가 놓여있다.

그러나, 아동의 체류자격-합법 또는 불법-이 교육권 보장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민정책적 입장에서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한 이민법적 처우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외국인의 신분과 출입국관리법상의 합법적 체류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외국인의 신분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개별적 처우와 한국내 체류를 정당화하는 규범에 근거한 일반적 처우를 구분하여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밀입국자, 여권·비자 위변조자,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무단히 체류하고 있는 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체류외국인이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취학중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체류를 정당화하거나 장기화하려 할 것이며 이는 외국인 체류질서의 훼손, 노동시장의 왜곡 및 불법입국자의 대량 유입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2. 아동의 불법 체류현황

1) 불법체류 아동 유형

불법체류 아동은 일반적으로 허가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고 있거나 처음부터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체류 중인 17세 미만자를 지칭한다.

유형적으로 살펴보면 ⅰ)입국 아동 ⅱ) 국내출생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국 아동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와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단독 또는 제3자와 함께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 등과 결합하여 동거중인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아동은 출입국기록 또는 외국인등록기록에 의하여 기본 정보가 파악된다.

그러나 국내출생아동은 불법체류중인 부모사이에 출생한 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 중인 아동으로서 체류자격 부여 신청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이민당국의 통계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다.

2) 입국 불법체류 아동 현황

2010. 2월말 통계에 의하면 18세 이하 불법체류 아동은 약5,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초・중학교 취학아동(6세~15세)은 3,200여명으로 나타나 있다.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대만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실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국적의 아동은 총 2,300여명이며 초・중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1,20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교과부도 취학중인 외국인 아동에 대한 통계는 갖추고 있으나 취학하고 있는 불법체류 아동의 정확한 통계는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시행되면 보다 세분화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아동관련 이민정책 의제

1) 서 론

교과부는 지난 8월 불법체류 아동이라 하더라도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중학교까지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법제84조)의 폐지와 취학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한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통보의무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제퇴거대상자인 외국인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동 통보의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34조1항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일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 제62조 2항, 독일 이민법 제87조 2항 등 외국입법례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동 통보의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신분이 불안정한 불법체류 부모 등이 보호·양육 중에 있는 자녀를 취학시킴에 따라 자신의 법위반 사실 및 소재지 등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아동의 취학 자체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는 예외 없이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위법상태의 조기해소를 위해 주무기관에 통보(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불법”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눈을 감으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칫 불법체류(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정부가 불법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signal)를 주어 무분별한 대량 불법입국을 초래하고 국내 체류자로 하여금 불법정주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법질서 준수의식 확립, 정부의 불법에 대한 무관용 의지 표명,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 방지 등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동 규정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통보의무의 획일적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법 규정의 신축적 적용(집행)을 통하여 보완될 사안으로 보인다.

※ 일본, 독일 이민법은 통보의무적용의 예외규정이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통보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부여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의무 이행에 따른 공익과 각 관서의 직무수행이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통보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62조(통보) 2항
  :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항의 외국인(강제퇴거대상자)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독일 이민법 제87조(외국인관청에 전달) 2항
  : 외국인이 필요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않고 퇴거가 정지되지도 않은 상태이거나 장소적 제한 위반, 그 밖에 외국인에 대한 추방사유를 알게 된 경우 공공기관은 즉시 관할 외국인관청에 전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1항(공무원의 고발의무)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3) 특별체류허가의 허용 여부

(1) 일 본

일본은 2009년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아동에 대한 특별체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적용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아동의 경우, 일본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면서 초·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일 것, 실제로 보호·양육할 것, 출입국관리당국에 자진출두·신고 할 것과 다른 법령에 위반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특별체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어 정착성은 인정되지만 불법취업조장죄, 여권법 위반 등으로 출입국관리행정의 근간에 관련된 위반이 있거나 반사회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특별체류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출생하여 자란 14살(중학교1학년 재학)의 필리핀 소녀에게 특별체류허가를 하였으나 그 부모에 대하여는 타인여권을 사용하여 불법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하고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아동의 학습권(교육권)보장 = 특별체류허가”라는 등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동의 출생지, 체류기간, 구사 언어, 정착성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체류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2) 독 일

독일의 이민통합법 제23조(a)는 주(州) 최고관청이 인도주의적 사유로 일정한 외국인에게 체류허가를 교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 규정은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규정이며 생계비용 부담의무가 확인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므로 교회, 자선단체와 같이 지급능력이 있는 조직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연방내무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간편하지도 않다.

아울러, 아동의 교육권을 이유로 그 부모의 체류도 허용되는지는 불명확하다.

(3) 미 국

미국은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Plyer v. Doe, 457 US 202, 1982)로 불법체류 아동의 공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교육권을 이유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부모의 자격을 합법화하는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4) 대한민국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체류허가의 특례(법제61조, 시행령 제76조)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은 인도주의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체류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체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아동의 부모에 대하여는 입국경위 및 불법체류 기간, 체류실태, 타 법령 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 아동 양육·보호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현행 정책

1) 기본 입장

법무부는 재학 중인 아동과 그 부모의 지위를 분리하여 다루어 왔다. 즉,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여 일관되게 아동대상 단속활동을 지양함과 동시에, 교사 등 교육종사자에 의하여 아동 및 그 부모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권을 앞세워 불법입국·체류의 정당화를 꾀하려는 장기불법체류 부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아동의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정책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억제라는 이민당국의 기본임무를 조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006. 4. 스리랑카인 야무나(여)가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근처 '코시안의 집'에 데려다 주고 홀로 귀가하던 중 단속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동 사건이 정부가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사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 현행 정책

법무부는 2010.9.3. 초·중등학교 주변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 자제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통보의무 적용 유예를 결정하였다.

또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아동이 부모의 단속으로 동반 출국하여야 할

경우라도 국내 후견인 내지 보호자가 있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국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단속된 부모가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한 경우 재학 중인 자녀의 본국으로의 전학 절차 이행 등 출국 전 신병정리 또는 아동의 국내 체류를 위한 후견인 내지 보호자의 선정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시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조치로 키르키즈스탄 여성(중학교 재학 중인 아들 양육) 및 방글라데시 남성(중학교 재학 아들 및 유치원생 딸 양육)이 보호일시해제를 허가받아 체류 중.

토 론 문

토 론 문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연구에 대한 토론문

성상환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장)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아동이 교육과정에서 당면하는 욕구와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현행 한국정부의 이주아동교육정책을 분석하여, 조사연구결과를 기초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교육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들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관련 최근 선행연구를 검토했고, 실태조사에 앞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

1. 조사내용에서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 이주학생을 위한 제도적인 확충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학교출석의 권장은 물론 이탈의 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다. 이러한 교육권을 현장에서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이주아동들에 대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이주아동들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보다 필요한 지를 짐작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아동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교육에 대한 시시점

아동을 테스트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정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다. 미국의 학교들은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로부터 제2 언어로서의 영어수업[ESL]이나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다. 대개 이민자 학생을 위한 ESL 수업은 법으로 정해놓은 강제규정으로 각 학교장이 임의로 교과 과정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이다(예: 뉴욕주정부의 ESL 교육정책).

대개 이민자들은 자녀의 테스트, 반 배정, 그리고 학교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하여 학교에 전화로 문의해 볼 수 있고 자녀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학년에서 교육과정상 필수적인 내용들은 습득해야 한다. 이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수업이나 이중 언어교육을 통해 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상 이민자 자녀가 본국에서 다니던 학교의 학년에 맞추어 미국의 학교에 등록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카운슬러(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년을 낮추어 등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 2언어로서의 영어수업을 통해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 가면 능력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학교에서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도 있다. 즉 이민자 학생이 택하는 다양한 과목에 있어서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년을 낮추어 들어갔더라도 졸업하기 위해 월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고등학교에는 '인터세션(intercession)'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족한 학점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필요한 과목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맞춤' 과목반이 있어 능력이 되는 이민자 학생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있다. 또한 이민자 학생이 본국에서 학업과정 중 이수했던 내용 중에서 특정한 과목들의 경우 미국의 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래 ESL 1이나 2등급에 있으면 자연스레 다른 과목들도 모두 ESL 수준으로 배정된다(LA 교육구에서는 ESL이 1A 1B 2A 2B 3 4등급으로 각 한 학기별로 나뉜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경우 절차를 모두 밟으면 ESL에서 3년 과정을 마쳐야만 정규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

미국에서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많다. 많은 어린이와 성인들이 제2언어로써의 영어[ESL] 수업에 등록하고 있다. 이런 수업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배우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수업은 타(他)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SOL]수업, 혹은 영어능력수업[English Literacy] 이라고도 한다. 어린이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를 배우게 될 것이며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영어 학습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교육을 실시한다. 별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영어 미숙련 학생’이라고 한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은 정규 영어수업 대신에 제2언어로써의 영어 수업을 택

한다. 이 보다 나은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은 정규영어 수업을 듣되,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련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돕기도 한다. 대개 이민자들의 경우 자녀의 학교 측에서 영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지원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담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민자 학생들의 배경은 다양한데 미국에 입국하기 전 본국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 기간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공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중도 동반입국 자녀들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아이들의 실제 연령과 한국에서의 학년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2. 개선방안의 적절성

보고서의 6장에서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제안의 상당부분은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상담교사교육과 채용: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일선 학교에서 이주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외국과 같은 이주아동 상담전문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는 현장에서 자기 교과전공이 있어야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교과목과 연계되지 않은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갈수록 학교교육현장에서 다문화 상담전문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자이자 옹호자로서의 상담교사는 이주 학생들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 가족, 사회단체, 제도의 층위에서 상응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교 상담교사들은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학교 상담교사들은 개인, 가족, 그룹 상담의 층위에서뿐만 아니라, 차별과 불공평의 문제들을 초래하는 교육제도의 층위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단계별 한국어교육이 필요: 각 지역마다 정규학교나 정규학급에 편입되기 전 이주아동들이 수료해야 하는 단계별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점학교를 지정/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6개월/1년 과정으로 운영.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계중등학교나 일반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편입함. 최종적으로 이주아동들이 일정한 학력을 통해 요건을 갖추면 취업과 연결이 되어야 함.

3. 기타

최근에 한국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가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것이 관련 입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듯하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듯.

-독일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아동의 경우 입국과 동시에 각 지역관청에 등록됨=> 해당 나이에 취학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짐. 18세까지 의무교육. 한국의 경우 입국 시 이주아동의 경우 행정적으로 연결망을 구축해서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유도함.

토 론 문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문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vs ‘불법’체류자 단속의 필요성

-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에 대한 반대 논거: 미등록 체류자인 부모의 약용 가능성 우려
-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인정
  헌법재판소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폭넓게 인정
- 이주아동의 교육권의 근거: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11조(행복추구권), 평등권(11조), 헌법 제6조(국내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 29조, 교육기본법 제13조
-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의 근거: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행정법규
- 헌법에 근거하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이 행정법규 위반 단속보다 우선

2.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보호

- 단속되어 강제퇴거절차에 놓인 이주아동들은 부모 면접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조사보고, 이에 대하여 강제퇴거절차에서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생활조력자나 법적 후견인의 지정, 귀국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정책 제언 제시

- 이주아동에게 출입국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한가?
  부모와 동반하여 이주하였거나, 이주한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동은 출입국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음. 법정보호자인 부모가 미성년 아동의 거소장소를 정함. 미성년자(20세 미만)의 불법행위책임 능력을 부정하는 민법과 14세 미만의 자의 형사책임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형법의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미성년자인 이주아동에게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이주자에 대하여는 단속과 강제퇴거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출입국위반 단속의 행정행위로부터 이주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조치와 내부 지침 마련 필요, 나아가 교육의 연속성 및 긴급한 치료 목적 등 인도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적극적인 특별체류자격 부여해야 할 것.
- 실태조사 결과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 가족에게 있어 교육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자', 즉 체류자격임.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절차 개시로 인하여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단절. 또한 부모 또는 아동만 단속·강제퇴거 조치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모든 아동은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에 위배, 미등록 상태의 부모를 상대로 단속 강제퇴거 절차 개시할 때 이주아동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귀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체류 허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3.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권 확보를 위한 통보의무 조항 적용 배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과 법무부 모두 교육 현장에서 이주아동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통보의무조항은 존재 자체로 이주아동의 공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실태. 따라서 법 존재의 실효성은 미비한 반면 그로 인한 악효과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시급함.
- 근본적으로 이주아동의 교육 기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이주아동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될 수 있음.

4.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다문화정책으로 포섭

- 이주아동의 적정한 학년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예비 한국어 교육 제공,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과 체계 마련, 이주아동의 다면적 정체성 유지와 장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 정책은 기존 다문화가정 2세를 위한 정책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 국적을 이유로 한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차별의 소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이에 근거한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교육 정책의 대상을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으로까지 확대 시행.

5. 참고: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안

- 2010. 10. 22. 김동성 의원 대표 발의, 이주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 이주아동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으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제2조)
- 아동 또는 부모의 국적, 인종, 언어, 종교, 신분, 재산, 정치적 의견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하 “체류자격”이라 한다)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는 기본이념을 선언(제3조)
- 교육받을 권리를 이주아동의 권리로서 명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제5조).
-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제6조), 보육지원(제7조),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주아동의 국내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제9조)
- 체류허가의 특례를 정하여 건강사유, 교육적 사유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체류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아동에 대하여 강제퇴거절차를 유예하도록 하고,(제10조)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조항의 예외조항을 규정(제11조)

토 론 문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김재우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역량강화팀장)

1.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관심이 ‘결혼이민’으로 형성된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지원의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더구나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법률은 되려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정’으로 정책대상으로 제한함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주민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주아동청소년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2. 발제문에 실태조사에 참여한 이주청소년 중에서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이 일부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험적으로 이주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역NGO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로 하루에 6시간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어, 학교라고 판단하는 이주아동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의미하는 대안학교가 실제로 공교육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인지 단지,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의 일시적으로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전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입학전 단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교습의 필요성’
   공교육 진입전에서 예비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그 방법과 기간에 대하여는 더 많은 고민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설정과 교육기간의 문제이다.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킬 것인가?' 주요한 변인인 것이다. 소위 '학교를 다닐만한 한국어 수준'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기준이고, 그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는 필연적으로 교육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교육기간은 이주아동청소년의 정규학교 학습공백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오히려 공교육에 편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의 적절한 합의점은 학교진입전의 한국어교육기간은 최소화하고 공교육 안에서 한국어교육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4.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에 대한 욕구와 학교적응

'나이와 학년의 불일치'는 이주아동청소년이 공교육에 진입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라는 실태조사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은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논의의 초기시절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나이와 학년의 불일치'가 야기하는 문제와 부작용은 이미 발제문에서 충분히 지적하였기에 반복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탈북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사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탈북청소년은 이주청소년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고, 탈북이라는 특수한 과정 때문에 학습공백의 기간이나 이전의 수학이력과 학력 관리의 측면에서 더 열악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북한이탈청소년의 입국이 시작된 초기에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에도 초등학교에 다녀야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였다. 탈북청소년은 초등연령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나이에 맞게 학년배정을 받게 된다. 오히려 보호자의 요구로 1~2학년 정도 낮은 학년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중학교이상의 경우는 학제의 차이와 이전의 수학이력을 고려하여 배정받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학제의 다름'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학습공백이 큰 학생의 경우,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 적절한 학년을 배정받게 된다. 이주아동의 경우는 여기에 '한국어 수준'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추가 되어야겠으나 최대한 나이와 학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5. 이주아동 모국어 등 모국문화관련 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아동들이 모국문화와 관련한 교육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주아동의 한국체류 목적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영구적·장기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정기간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사회의 인적구성이 다양해짐과 다문화사회로사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웨덴의 사례에서 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적인 배려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스웨덴의 공교육에서는 재학하고 있는 이주아동 중에서 동일국가 출신이 3명 이상 있을 경우, 해당국가 출신의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이주청소년 교육지원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 따돌림 현상을 매개로 본 학교의 다문화, 인권감수성 실태

학교와 관련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주아동의 학교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현상이 지극히 인지적인 수준에서의 '다름의 지각'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성인과는 다르게 아동청소년들은 민족적인 또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혹은 실리적인 이유로 또래의 이주아동청소년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색, 언어의 다름, 환경적인(외국출신 엄마) 차이 때문에 괴롭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름의 지각'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도 한다. 서구출신의 또는 서구출신처럼 보이는 이주아동청소년은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름의 지각'에서 오는 행동은 인식수준에서의 교정작업으로 충분이 수정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교육 내에서의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지향점이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수준이 '다문화교육=다른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얼마나 많은 타국의 문화를 접해보았는가'보다 '타국의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주제를 이주민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소수자를 포괄하는 것이지, 그 사회의 이주민만을 지칭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회의 모든 소수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는 시민교육의 관점이 우리의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시점이다.

7. 이주아동의 미래설계와 교육, 진로에 대한 고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주아동청소년과 같이 생활하고 호흡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이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을 포괄하고 있다. '어떻게 학교를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게 만들어 줄 것인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계속하게 도와줄 것인지'.

제법 나이가 있는 청소년기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일 수 록 이런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고민들은 종국에는 '진로와 취업'이라는 '화두'로 귀결된다. 우리센터에 오는 친구들 중에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의미를 찾지 못해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이들,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 아직 정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방안이 그저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정착하고 정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마다 교육체계가 다르고, 교육의 내용도 다르다. 사회에 진입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도 상이하며, 한국체류목적도 저마다 다양하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고민에 '다문화적 시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참고자료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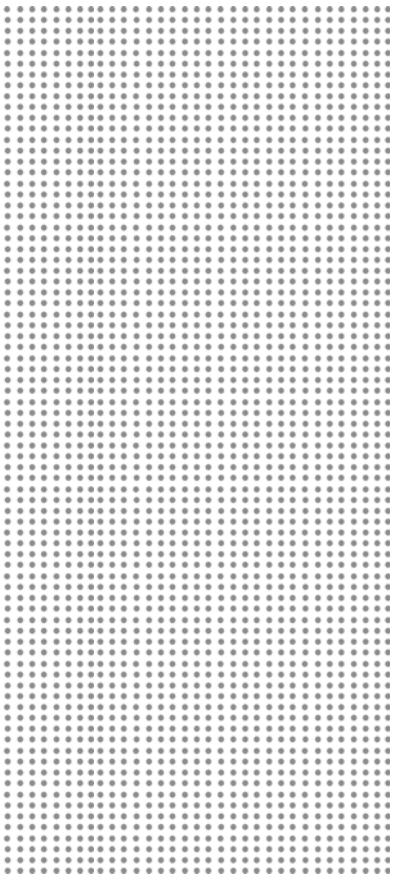

2010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요 약 보 고 서

연구수행기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책임 연구원 **이혜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연구원 **김미선**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은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연구보조원 **신순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최은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아동이 교육과정에서 당면하는 욕구와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현행 한국정부의 이주아동교육정책을 분석하여, 조사연구결과를 기초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교육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들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관련 최근 선행연구를 검토했고, 실태조사에 앞서 설문지를 구성했다. 이때 본 조사연구의 기본 문제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는 어떠한가?"에서 출발하여, 이주아동을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진 만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교육권을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학교출석의 권장은 물론 이탈의 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를 보다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육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학교진입(교육기회의 평등한 보장), 학교생활적응(교육과정의 평등한 보장), 이탈 또는 졸업(교육결과의 평등한 보장)으로 구분하고, 이주아동이 받고 있는 교육형태를 공교육기관 진입여부에 따라 공교육, 대안교육, 탈학교(학교이탈)로 구분하고, 이주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했다. 본 조사연구의 대상을 유의표집하고, 구성된 설문지에 따라 이주아동의 교육과정별 실태와 이들의 학부모・교사의 교육지원실태를 조사했고, 이주아동 담당공무원・민간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관련부처・시도교육청・학교・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에서의 교육지원실태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본・독일・미국에서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2009년 현재 이주아동의 학교이탈률이 40.4% 이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교육결과의 평등한 보장이 궁극적으로 이주아동의 통합적 발달과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아동발달이론과 유엔아동권리협약관점에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탈하고 몽골로 귀국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도 현지에 방문하여 조사・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 본 연구의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11)]

1. 문제제기

○ 총 외국인주민 자녀는 2009년 현재 107,689명이며, 이들 가운데 학령기 아동인 만 7세~18세 이하는 43,649명임. 이들의 40.4%인 17,634명은 학교생활에서 중도 이탈하여 다니지 못하고 학교 밖에 방임되어 있음. 이를 통해 이주아동의 학교이탈률이 40.4% 이상임을 알 수 있음.

○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몽골, 베트남 등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은 자녀를 한국인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없음. 그런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여, 공교육에 겨우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음. 따라서 이주아동 가운데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이탈률이 매우 높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개정(2008)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에도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교사 등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 최종 결정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교장이 함. 즉 한국의 이주아동교육정책은 '자녀에 대한 지원'과 '미등록 부모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음.

2.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의 차별성은 ① 조사대상의 포괄성(한국의 공교육에서 교육소외와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나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공교육과정에서 중도 이탈하고 몽골로 귀국한 이주아동과 부모를 현지방문하여 심층면담조사), ② 조사방법의 객관성(이주아동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설문지에 의한 양적조사), ③ 유의표집에 의한 최초의 전국단위

11) 이 장의 집필자는 이혜원 책임연구원이다.

이주아동・부모・교사 대상 3종 세트 설문조사, ④ 일본・독일・미국의 사례조사연구, ⑤ 이주아동 담당공무원・민간전문가와의 심층면담과 이주아동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본 조사연구결과의 피드백 및 정책적 제안의 객관성 확보임.

제2장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국내외 기준[12)]

1. 이주아동의 개념과 욕구 특성

○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하여 이주아동을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진 만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함.

○ 아동발달이론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분석하고, 김성천 외(2008)의 이주아동 심층면접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특별한 이주경험으로 인한 연령별 욕구 특성을 분석함.

2. 교육권의 개념

○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3조에 기초하여 교육권을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학교출석의 권장은 물론 이탈의 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학교출석의 권장과 중도탈락의 방지 등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을 강조함.

○ 교육권의 내용은 선택권(교육 받을 장소, 시기, 교사, 내용, 방법, 언어 등을 선택할 권리), 청구권(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조건의 정비, 교육정보 등을 요구할 권리), 참여권(학생의 학교교육에 관한 개인 의견을 학교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포함.

12) 이 장 1,2,4절의 집필자는 이혜원 책임연구원이고, 3절은 이혜원 책임연구원과 이경숙 연구보조원이 나누어 집필하였다.

3.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기준

○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 기준은 CRC이며, 아동의 발달 특성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구분함. 이 가운데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의미함. 따라서 아동의 교육권은 발달권의 일부이며, 핵심영역임.

○ CRC의 총 54개 조항 가운데,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된 조항은 제2조(비차별), 제9조(친부모 와 함께 살 권리), 제10조(부모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 제26조(사회보장권), 제28조(교육권), 제29조(교육의 방법), 제30조(고유한 문화· 종교·언어를 사용할 권리)임.

○ CRC 제28조와 제29조의 내용을 분석한 Hodgkin & Newell(2002)에 기초하여, 한 국가가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13가지 핵심사항과 함께 총괄평가지표와 세부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이주아동교육정책의 분석틀을 구성함. 유엔인권이사회(2010)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인권과 교육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을 강조하고, 이주부모와 이주아동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배경과 생활환경, 교육 불평등과 소외 등 “이주와 삶”에 얽힌 특별한 상황과 욕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함.

○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구별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함. 사회권 규약은 교육의 단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본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의 원칙 적용을 규정함.

○ 인종차별철폐조약 일반논평 30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가는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공공교육기관의 개방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상태의 아동을 위해 출신국어 교육, 귀환 시 현지적응을 위한 정책을 추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 난민협약과 의정서, 무국적자협약은 난민 아동과 무국적 아동에게도 구별 없이 초등교육이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함.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각 국 교육제도가 사회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사업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이주민의 교육권은 인권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초등교육이나 의무교육을 초월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각 국 정부는 이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언어 및 학습운영에 있어 목적국의 주류언어 습득을 돕기 위한 개별 교과과정이나 일대일 지도프로그램을 개설하되 별도 그룹으로 분리하지 말고 병행운영할 것,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이주민 인구의 필요에 따라 이주민의 언어로 제공될 것, 이주민의 교육접근정도와 교육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함.

○ 유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 정부에게 첫째,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이주정책의 주류화 ,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CRC 제3조)의 정책기조 채택, 둘째, 이주정책에 있어 가족재결합의 이행 등 가족결합의 원칙의 고수, 셋째, 이주 지위와 관계없이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의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보장 의무 이행을 권고함. 특히 당사국 정부가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에 대한 귀환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할 것 등을 권고함.

○ 이주아동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 권리는 체류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함.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도 이주아동도 의무교육의 대상임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주아동 교육권의 차별 없는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하고, 가족결합권의 보장,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 규정 등 실질적인 처우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민의 학교, 교육행정기관, 일반행정기관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모든 공무원의 통보의무는 미등록 이주민의 행정기관 접근에 불안을 주는 요인이므로, 법상 단서조항을 통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범위의 대폭 조정 혹은 폐지가 필요함. 또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와 관련된 조항에 아동의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학습중단 방지 조치를 포함해야

함. 단속된 사람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남겨진 아동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이주아동의 교육 실태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

○ 이주아동의 교육 실태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이 대체로 낮으며, 이들의 학교적응에 아동의 성별, 학년, 한국어능력, 어머니의 출신국, 어머니의 최종학력, 가족의 교육적 지지, 교사의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가운데 특히 김정원(2006)은 몽골 출신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이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함. 김성천 외 (2008)는 심층면접(아동 6명, 전문가 10명)과 델파이조사(전문가 27명)에 의존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과 해외사례에의 접근이 본 연구의 설문구성에 유용함. 오성배(2009)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 실태를 교육접근, 교육경험, 교육성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교육 진입과정 문제, 수업적응・또래관계문제, 낮은 교육성취율을 보고함.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함. 이재분 외(2009)는 조사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가정의 자녀보다 더 열악한 발달 환경에서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함.

○ 이주아동의 교육지원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관련 부처의 자료에 기초한 문헌조사와 교사 등 관련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통해 현행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현행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상당수의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곽한영(2010)은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이주아동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라는 시혜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취학기회가 제한되며 학교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3장 한국정부의 이주아동교육정책[13)]

1.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

○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출입국관리정책이 주였던 2004년 이전의 시기와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4년 이후부터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 도입이 결정된 2003년 이전까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부재하는 공백은 NGO의 지원활동으로 메워져 왔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용허가제 도입과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상회하고 이주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한국사회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음. 한국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책 수립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공교육 내에서도 일정 부분 '다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함.

○ 한국정부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인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2008년 12월에 심의·확정됨.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사회 체류 외국인들을 위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이주민 지원을 국가 주도의 일상적 사업으로 제도화했음. 이를 통해 과거 소수의 유관부처에서만 추진했던 외국인관련 정책이 범정부차원으로 확대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 분담 및 지역에 따른 특성화 등으로 소위 '다문화'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의제로 부상함.

○ 2010년 현재,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사회통합 기조 아래,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력단속이라는 '배제와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2. 한국정부의 이주아동정책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이전 한국정부의 이주아동정책은 사실상 '방관과 묵

13) 이 장의 1,2절은 석원정 공동연구원이 집필하였고, 3절은 신순영 연구보조원이 집필하였다.

인’이었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과 사회보장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됨.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은 대부분 미등록 혹은 무국적 상태로 한국사회에 존재함.

○ 학령기 체류아동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교육이 이슈화됨에 따라 2001년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지침이 내려지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이 가능해짐.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3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의 지침으로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이 보다 더 용이해짐. 이는 공식적인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추진된 간헐적인 법령의 정비였으며, 현장의 전향적인 변화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님.

○ 200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민과 그 2세들이 사회통합의 주요대상으로 공식화되고 다양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을 포함한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려 없는 합동단속이 추진되고 있음.

3. 한국정부의 이주아동교육정책

○ 한국정부의 이주아동 교육정책은 2000년대 중반까지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이주아동 관련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등 일시적인 계기에 따라 임시적인 조치가 발표되는 수준이었음.

○ 2006년 이주아동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한 최초의 정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자녀지원대책이 발표됨. 정책 대상에 이주노동자 자녀를, 정책과제로 미등록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설정함.

○ 이후 현재까지 매년 이주아동 교육정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안과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및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 관련 중장기계획이 차례로 발표되면서, 정부부처간의 협력과 유기적 연계 속에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2008년을 기점으로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은 현실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통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렴되기 시작함. 이후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 문제는 기본 계획에서 아예 누락되었으며 관련한 문제들은 관련 법령 개정 및 민간의 개입으로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2006년과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차 개정하고, 2010년 또다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발의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내실화를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근거법이 없는 교육정책 속에서 법령의 개정과 배치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도외시하고 있음.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서는, 새롭게 중도입국자녀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학교이탈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 아동의 체류자격 문제 등 미등록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은 부재함.

제4장 연구방법[14)]

○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이루어짐. 조사연구는 양적조사연구, 질적조사연구, 해외사례조사연구로 나뉘어 수행됨.

1. 조사대상

○ 설문조사가 가능한 전국 22개 학교와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이주아동은 공교육 재학아동 112명, 대안교육기관 40명, 이탈아동(몽골현지) 38명, 총 190명을 조사함. 그러나 조사 설문에 응답하여 회수된 총 190부의 응답지 가운데 응답내용이 부족한 4부를 제외한 총 186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함. 이주아동의 부모는 한국내 78명과 몽골현지 18명, 총 96명을 조사함.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을 한 교사는 설문에 응답한 이주아동이 재학하고 있거나,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67명을 조사함. 외국인정책 관계자는 법무부 교육정책 관계자는 아동·학부모·교사 실태조

14) 이 장은 각 파트를 담당한 연구원들의 집필 내용을 최은미 연구보조원이 총괄 정리하였다.

사가 진행된 지역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교육청 5곳과 산하의 지역교육청 4곳을 선정ㆍ면담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사무관 1명을 면담했음.

○ 미국현장조사에서는 교육구 내 초등학교 ELD 센터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이주아동 2명, ELD 센터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이주아동의 부모, ELD 센터 학교에서 ELD 학급을 담당한 교사 1명, 교육구 내 ELD 담당 국장 1명을 개별 심층 면담했음. 이주아동 교육문제 관련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미등록 이주청소년들의 고등교육 진입을 위해 의회 입법추진중인 교육학박사 1명과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권리옹호와 법률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이민변호사 1명을 각각 심층 면담했음.

2. 자료수집

○ 국내 조사는 연구원들과 조사수행원 2명, 그리고 통역원 1명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음. 이주아동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만나,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조사 대상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수거했음.

○ 해외 조사는 몽골 현지 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를 수행했고, 몽골 현지 조사는 연구원 1명과 통역원 2명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음. 미국 현지 조사는 연구원 1명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사전협조요청과 승인된 면담일정에 따라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심층면담조사를 수행했음.

○ 외국인정책 관계자 조사는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국내체류 이주아동의 통계,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방향, 특히 난민아동과 중간입국아동, 미등록 아동에 대한 처우와 교육권 보장방안, 가족재결합권 등 국제인권기준의 이행에 관해 서면으로 질의함.

○ 민간전문가 면담은 민간전문가에게 공통적으로 기관의 이주아동 지원활동,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견해,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교육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이탈 등 4개 주제에 대해 현장상황에 근거한 의견과 현황을 조사함.

○ 교육정책 관계자 조사를 위해 사전에 선정한 해당 기관에 전화와 공문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고, 심층면담조사는 2010년 6월 25일 A교육청을 시작으로 8월 20일 교과부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담시간은 1~2시간이 소요됨.

3. 설문내용 구성

○ 최종설문지를 아동은 영어,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총 5개 국어, 부모는 영어, 몽골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4개 국어로 번역하여, 설계된 설문지를 이주아동 10명, 이주아동의 부모 2명, 이주아동을 경험한 교사 2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했음.

○ 이주아동 및 이주아동부모 대상 설문내용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입학과정, 학교생활, 진로, 체류로 구분되며,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대상 설문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입학과정, 학교생활, 정책 평가로 구분됨.

4. 주요 용어 정리

○ 이주민 : 이 연구에서는 출생국이나 출생하여 성장한 출신국의 국경을 넘어 이주한 사람을 '이주민'으로 통칭하고, 이들 중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주민은 '이주노동자', 한국인과의 결혼을 위해 입국한 이주민은 '결혼 이민자'로 정의함. 다만 이 연구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님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민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인'으로 표기함.

○ 등록이주민과 미등록이주민 : 이주민의 체류 자격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록(documented)된' 또는 '합법적 체류 상태'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주민에 대해서는 '미등록(undocumented)' 이주민으로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불법(illegal)', '미허가(Unauthorized)', '비정규(irregular)'가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한 인격체를 '불법'으로 부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아 '불법'이라는 용어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음. '비정규'라는 용어는 적법한 출입국관련문서를 지참하지 못한 '미등록'이나, 합법적 지위를 허락받지 못한 "미허가"의 상태 모두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라 할 수 있으나, 그 동안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난민 : 이 연구에서 난민이라 함은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부합하는 사실적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

은 사람은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심사가 진행중인 자는 난민신청자로 표기함.

○ 다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문서의 용어를 그대로 표기한다. 국제조약은 지면상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기함.

○ 국제조약의 표기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사회권 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권리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 의정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으로 줄여서 표기함.

5. 자료분석

○ 조사결과는 SPSS 1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음.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반적 교육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했고, 이주아동의 교육과정·교육형태·학교급·비자유무별 교육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와 카이자승 검증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일부 요인에 대해 Anova와 Mann-Whitney 검증을 사용했음.

제5장 연구결과[15)]

1. 이주아동 대상 조사연구결과

1) 이주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총186명을 조사했으며, 남 96명(51.9%), 여 89명(48.1%)이었음.

○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은 8세에서 24세까지이며 14세(13.0%), 17세(11.9%), 19세(11.9%%)가 많았고, 출생국은 몽골이 58.6%로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임.

15) 이 장의 집필자는 1,2절 이은하 공동연구원, 3절 최은미 연구보조원, 4절 신순영 연구보조원과 이경숙 연구보조원, 6절 김미선 공동연구원이다.

○ 현재 학교 급은 초등학교(42.5%), 중학교(38.7%), 고등학교(18.8%)로, 공교육이 105명(56.5%) 대안교육 41명(22%), 이탈 40명(21.5%)이었음.
○ 총 186명중 비자가 없는 아동은 113명(62.8%), 비자가 있는 아동은 64명(35.4%)임.

2) 공교육진입과정에서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 공교육 진입 전에 34.9%(65명)가 '혼자 있었다'고 답했고, 61.4%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해입학이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입학절차 이해 어려움37.2%, 비자문제 34.3%, 학교 측의 입학거부도 15.2%나 있었다고 답했다.
○ 학교 측의 입학거부가 있었다는 응답 중 20%는 비자가 없었고 12.5%는 비자가 있는데도 입학거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3) 학교생활적응과정에서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 학교생활 조력은 주로 가족에게서 받고 있으며, 긴밀한 친구가 없다고 답한 아동도 있었고, 한국인 친구 집에 거의 가지 않거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아동이 42%로 나타났음.
○ 한국어 이름 사용여부에 대해 68.8%가 사용한다고 답했고 한국어 이름 사용 이유는 한국에 살고 있고(42.5%), 한국인이 내 이름을 이상하게 해서(34.6%), 타인이 권해서(6.3%), 외국인임을 아리고 싶지 않아서(10.2%)라고 답했음.
○ 학교생활에 필요한 욕구는 특기적성교육욕구(78%)가 가장 높았으며, 모국문화체험(74.6%), 한국문화체험(74.2%), 모국어교육(71.5%),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70.8%), 숙제 및 학습보충(70.1%), 나이에 맞는 학년 배정(66.3%), 한국어 교육(64.5%), 모국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지(가정통신문)(53.3%), 모국어로 해주는 교육(53%), 방과후 기관연결(48.6%), 상담 시 통역지원(43%) 순으로 나타났음.
○ 이주아동이 한국어 처음 배운 곳은 지원단체(28.5%)였으며, 19.9%는 나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때문에 유치원에 다녔다고 답했음.
○ 학교생활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답한 경우 발음놀림(41.9%), 무시(36.6%), 수군거림(30.6%), 피부색 놀림(25.3%), 돌아가라고 협박(21%), 발로 걷어차임(15.1%), 소지품

빼앗김(9.1%)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주로 공교육 내에서, 고등학생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음.

4) 공교육이탈과정에서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침해 실태

○ 이주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것(36.1%,)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30.2%), 본국의 학교문화와 한국학교 문화가 다른 것(28.6%), 나보다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27.8%), 한국학생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26.7%,) 학교수업료 부담(25.2%), 상급학교 진학이 안 되는 것(24.0%), 경제적 이유로 취업(18.0%,)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모국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서(14.7%)로 학교공부와 외국인단속, 학교문화의 차이, 어린학생과의 공부 등의 응답이 높았음.

○ 비자 없는 외국인단속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아동의 경우 현재 비자 없는 아동 60%가 비자 있는 아동 14.4%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사실상 비자 없는 아동은 외국인단속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비자가 있는 아동역시 외국인단속에 반응하고 있음.

○ 학년배정의 적정성 여부를 본 결과, 응답자의 65.9%는 절절하게 배정되었다고 답했고, 28%는 적절하지 않게 배정되었다고 답했음.

○ 상급학교 진학 시 비자 없는 아동(30.8%), 비자 있는 아동(20.5%)으로 비자 없는 아동에게서 비자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이탈아동과 중, 고등학생에게서 응답률이 높았음.

5) 부모 또는 아동의 단속·강제추방에 의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침해 실태

○ 이주아동 부모는 외국인 단속에 대해 아동이 부담감을 갖지 않게 가능한 언급을 피한다고 했으나 학교는 보내지만 가능한 외출을 자제시키거나(6.5%), 학교를 포함해 외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음.

○ 비자 없는 외국인단속은 이주아동의 교육단절과 관계가 있고 비자로 인한 불편함중 입학, 전학, 상급학교 진학 중 직접적으로 교육의 접근성과 관련된 항목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게임할 때, 가까운 사람이 단속될 때가 각각 37.1%였고, 학교 홈페이지 가입이 36%로 나타났음.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자가 없는 것이 아동의 학

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고 특히 '가까운 사람이 단속될 때' 라고 응답한 경우는 아동이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별의 순간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이주아동의 부모 대상 조사연구결과

1) 이주아동의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는 총 96명으로 남자 27.1%, 여자 72.9%이며, 국적별로는 몽골(75%), 한국(7.3%), 중국(4.2%)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들 중 비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 40%, 없다고 답한 사람은 57.9%이며, 응답자의 자녀 중 비자가 있는 경우는 51.6%, 비자가 없는 경우는 46.3%이었음.

○ 자녀의 현재 재학 학교급은 초등학교(47.4%), 중학교(37.9%), 고등학교(14.7%) 라고 답했으며, 재학학교를 교육형태로 분류하면, 공교육(69.8%), 대안교육(9.4%), 이탈(20.8%)로 나타났음.

2) 공교육진입과정에서의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실태

○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자녀 혼자 집에 있거나 지원단체에 다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자녀 중 절반은 3개월 이내에 학교에 입학하였다고 답하였으나, 1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19.8%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부모가 비자가 없는 경우, 학교 입학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들은 자녀의 한국어 미숙, 비자가 없는 체류 상태, 입학 절차를 알지 못해서 자녀의 학교 입학에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음. 부모들은 학교입학과 입학 후 학교공부 보충지도, 생활상담, 비상시 후견인 역할 등 자녀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원을 지원단체로부터 얻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3)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의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실태

○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자녀에게서 얻고 있다고 답했으며(64.6%), 다음으로 학교선생님(53.1%)과 지원단체(24.0%)를 꼽았음.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한국어교육(37.9%), 경제적 지원(29.5%), 교과 보충지도(12.5%)라고 답했음.

4) 체류자격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 학부모 응답자 중 64.6%가 부모가 단속 추방되어 자녀가 혼자 한국에 남게 되는 경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음. 부모가 단속된 아동들은 귀국(42.6%)하거나 친지의 돌봄으로 한국에서 생활(31.1%)한다고 응답했음. 미등록체류가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에서 학부모들은 단속으로 인한 불안정(89.5%), 입학,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84.1%), 은행거래 등(83.0%), 안정된 학습 환경(78.5%)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음. 미등록외국인 단속 기간중 학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를 물었을 때 52.6%의 부모가 아동에게 단속에 관해 언급하고, 17.9%는 등교 금지는 물론 외출을 금한다고 응답했음.

3. 교사 대상 조사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교사대상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67명이었음. 성별은 여자 73.1%, 남자 26.9%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음. 경력은 10년 이상인 교사가 68.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인 교사는 15.2%,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사는 12.1%, 1년 미만인 교사는 4.5% 순이었음. 직위는 일반교사가 59.7%로 가장 많았고, 부장교사가 22.4%, 관리직인 교장/교감은 16.4% 순이었음.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67.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26.9%, 고등학교가 6.0% 순이었음.

2) 교육 관련 경험

○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입학절차와 학년 배정을 위해 고려하는 기준을 살펴본 결과, 나이, 본국학제, 한국어 실력, 학습능력 등 모든 요소에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교사가 지도를 위해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은 이전 담당자(33.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문화연수를 포함한 교원직무연수(22.0%), 언론 영상/출판물(18.9%), 교육청(15.7%), 이주민 관련 지원단체(7.9%), 교육과학기술부(2%)의 순이었음.

○ 이주아동이 학급에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부분은 반평균(66.7%), 교과진도(41.8%), 이주아동을 위한 개별지도(40.0%), 행정처리(27.3%)의 순으로 많았음.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부분은 학급의 다문화감수성이 77.6%로 가장 많아서 이주아동이 학급에 있을 때, 학급의 다문화 감수성'은 높아지지만, 반평균은 낮아지고, 교과진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사들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주아동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예비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9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업능력 평가기준 마련(89.6%), 별도의 학교지정(59.7%), 이주아동 특별학급(55.2%)의 순이었음. 학급에서는 한국 아이들과 같은 학교급에서 한국어만을 따로 수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사들로서는 이주아동의 예비 한국어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

○ 이주아동이 결석하였을 때 교사들의 대처방법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에게 연락한다는 응답이 80.6%로 가장 많아 한국아동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음.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주아동이 결석하는 이유는 부모 사정(41.8%)과 외국인 단속(7.5%)이라는 응답이 총 49.3%로 가장 많았고, 학업흥미 상실이라는 응답이 16.4%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한편,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는 이유에서도 학업흥미 상실이라는 응답이 25.4%로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 악화라는 응답이 22.4%로 많았음. 이주아동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3.9%였으며, 특별조치는 4가지 방법으로 분류됨. 첫째, 교사들의 직접 상담, 둘째, 후견인이나 이중언어 강사를 통한 연락관계, 셋째, 멘토활동, 넷째, 문화체험에 의한 학업 흥미 유발이 있었음.

3) 정책 이행 현황

○ 한국어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44.8%에 불과했고, 한국어 수업 담당자는 담임교사(44.4%)가 가장 많았고, 한국어 수업 방식은 교과부 교재 활용(33.3%)이 가장 많았음.

○ 학교 제공하고 있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인 학습보충지도, 기초교과 멘토링은 제공하고 있는 곳이 다소 많았고, 그 외 문화체험 멘토링, 한국어교육 멘토링, 생활 학습 상담 멘토링, 그리고 방학 중 집중캠프(학습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는 곳이 다소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학교 제공하고 있는 이주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지원과 교과서 지원, 준비물 지원은 대체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았고, 취업교육/취업정보 제공, 교복 지원은 제공하고 있는 곳이 다소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학교 제공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정체성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인 모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이중언어 교육, 모국어로 진행되는 성, 환경 교육은 전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모국어 가정통신문, 모국어 통역지원, 모국어 학교생활 안내책자는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제공하는 곳이 가장 적었음.

4) 정책 인지 현황

○ 이주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를 살펴본 결과, 교과부 교육지원 계획(69%), 거주사실증명서로 입학 가능(68.7%), 비자가 없어도 중학교 입학 가능(56.9%), 그리고 유엔의 교육접근 법 개정 권고(51.7%)에 대한 인지 수준은 대체로 높았음. 그러나 공무원 통보 의무(37.9%)에 대한 인지수준은 가장 낮았고, 시행 후 5년 가까이 지난 거주사실증명서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교사들의 31.3%가 모르고 있었던 결과는 학교관리자와 교사에게 이주아동 관련법을 비롯한 시행령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고 있었음.

4. 이주아동 담당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조사연구결과

1) 외국인정책 관련 전문가

○ 첫째, 국내체류이주아동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고 둘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법

적용대상인 난민아동과 중간입국아동의 처우 보장을 위한 정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 협약상의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행과 별도의 처우 규정 여부를 물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교육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2006년에 시행한 한시적 특별 체류허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기준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기반해 다루고 있는 가족재결합권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과 로드맵에 대해 물었다.

2)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 교육과학기술부의 현행 이주아동 관련 정책은 2008년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대책'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음. 교육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자율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정 역할을 주로 하는 정책 기능 분담을 추진방향으로 하며, 매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의 큰 방향은 공유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학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은 공통적으로 이주아동과 학부모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지원과 교사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두 축으로 이루어짐.

○ 정책 대상으로서 공교육 내 이주아동은 다문화아동에 포함되며, 따라서 교육 지원에서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련 정책 수립 후 지속적인 진행을 통해 사업의 기본 내용은 안착되고 있으나, 지역 특징 및 정책 대상의 개별 차이가 고려되기 보다는 대상의 소수성에 따른 사업 내용의 획일화 경향을 보임. 한편 이주아동의 정확한 통계 파악 등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선결 과제가 존재함.

○ 이주아동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어와 학습보충 지도 등 교육적 지원은 주로 방과 후 활동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교육 실태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학교 현장의 사례 공유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인지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입학과정, 학년배정과 학업수행, 다문화프로그램 운용, 통·번역 지원, 졸업과 진학 및 중도탈락 등 이주아동이 공교육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해결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발견되었음.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교육 과정은 학교 현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관리자 및 교사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측면도 존재함.

○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는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들에게 사실상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많은 담당자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을 경우에도 교육계와 무관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일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반교육적 긴장을 발생시키고 교육 당사자 간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통보의무와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력하였음.

○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자 유무나 국적, 한국어 능력 등에 상관없이 이주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취학 전 방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교육권 보장에 장애가 되는 교육정책의 개선 및 현장의 한계 극복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3) NGO관계자

○ 이주아동의 입학 관련 법조항의 개정 등의 노력으로 초등학교 입학은 이전보다 용이해졌으나, 여전히 중고등학교 입학은 어려움. 이주아동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일선학교는 여전히 외국인아동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높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전체성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이주아동의 입학을 꺼려함.

○ 민간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이 정례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제공되지 않는 한국어 교육은 아동들이 학습흥미를 잃게 하고, 학교적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함.

○ 민간전문가들은 이주아동 담당 교사들이 이주아동이 가진 특수한 배경이나 그에 따른 특성에 대해 무심하고, 아동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김. 담당 교사의 무관심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 전체성적을 낮게 하는 골칫덩이로 여기는 시선과 태도는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을 갖기 어렵게 함. 한편 부모들은 자녀들이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함.

○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주아동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미등록 상태의 아동들은 진학이나 취업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과 학업에 대한 부담 속에서 학교이탈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또 미등록이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급식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주아동만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공교육기관내 별도 학급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아동들과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할 기회를 잃게 되고, 오히려 낙인감을 갖게 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봄. 다양한 교육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아동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5. 외국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사례연구결과

1) 일본

○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 수는 2008년 말 현재 221만 7,426명이며 이 가운데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5세에서 19세의 이주아동 수는 22만 1,336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함. 국적별로는 중국, 브라질, 한국. 조선, 필리핀, 페루 순으로 많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5천 - 1만 명으로 추정됨.

○ 일본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6세부터 15세까지 학령기 아동은 9년간 초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음.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약칭 입관법)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학교에서 온정과 배려 차원

에서 취학을 받아들이고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2006년 제정 2009년 개정한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적 사안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상황, 소행, 내외의 제반 정세,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 등이 고려될 때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더해 최근 민주당이 의회에 제출한 입관법 개정내용 중 학교의 신고의무 폐지가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됨.

2) 독일

○ 독일 내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는 1,510만 명(2006년 현재)으로 전체 인구의 18.3퍼센트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0세 이하는 450만 명임.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독일 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1,000에서 3만 명까지 추산됨.

○ 독일에서 학교/교육 입법은 연방주의 권한이고 주에 따라 6세에서 15세까지 9년간 혹은 10년간 의무교육 행해짐.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관련 법제도는 연방주에 따라 명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을 허락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혹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각 연방주에 따라 다름.

○ 독일 이민법(체류법) 87조는 모든 행정기관은 학교 이사회를 포함 미등록 이주민을 이민청에 신고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23조 a 에 명시된 '고충'(어려운 생계, 긴급한 인도주의적 혹은 개인적 근거 등 독일에 계속적인 체류가 필요한 경우)이 참작되면 체류허가 주도록 함. 2009년 내무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으며, 각 연방주마다 이민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변경조치 들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중임.

3) 미국

○ 미국내 이민자 수는 전체 미국주민 9명 중 한 명이고 학령기 아동 5명 중 한 명은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의 자녀임. 미등록 이민자 수는 약 1천 2백만 명이고 이 가운데 16퍼센트에 달하는 약 2백만 명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추산됨.

○ 미국 공교육제도는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총 13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2001년 개정된 연방법인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이민가정 자녀를 포함한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추가 학습기회 제공, 영어미숙학생(주로 해외출생 이주아동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의 자녀)의 영어능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학업성취에 노력함.

○ 미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1982년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취학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학 이상 교육과 그 이후의 진로에 장애를 겪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DREAM 법안의 입법성사 여부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등교육 진입과 관련된 체류합법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제6장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16)]

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개선방안

○ 교육행정서비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통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연계

○ 모든 이주민을 위한 행정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 모든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행·재정조치 강화

2.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적합한 학년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예비 한국어교육 제공

○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과 특별한 이주경험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발과 지원

○ 이주아동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 이주아동과 가족의 이주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이주아동부모 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16) 이 장의 집필자는 이경숙 연구보조원이다.

3.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 방지와 교육성취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이주아동의 학업 중단 및 공교육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 교육조치의 개발과 지원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원칙에 기반한 이주아동교육정책의 이념과 구체적 목표의 설정
○ 이주민 지원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 확대
○ 출입국 관리와는 별도의 행정등록체계의 개발과 시행
○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법률규정의 신설(제정)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가족결합권'의 국내적 수용
○ 이주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지지)체계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에 기반한 공무원・교사・민간활동가・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국내외 기준에 대한 인식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기반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의 확대 실시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인 쇄 | 2010년 11월
| 발 행 | 2010년 11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668 | F A X | (02) 2125-965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64-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